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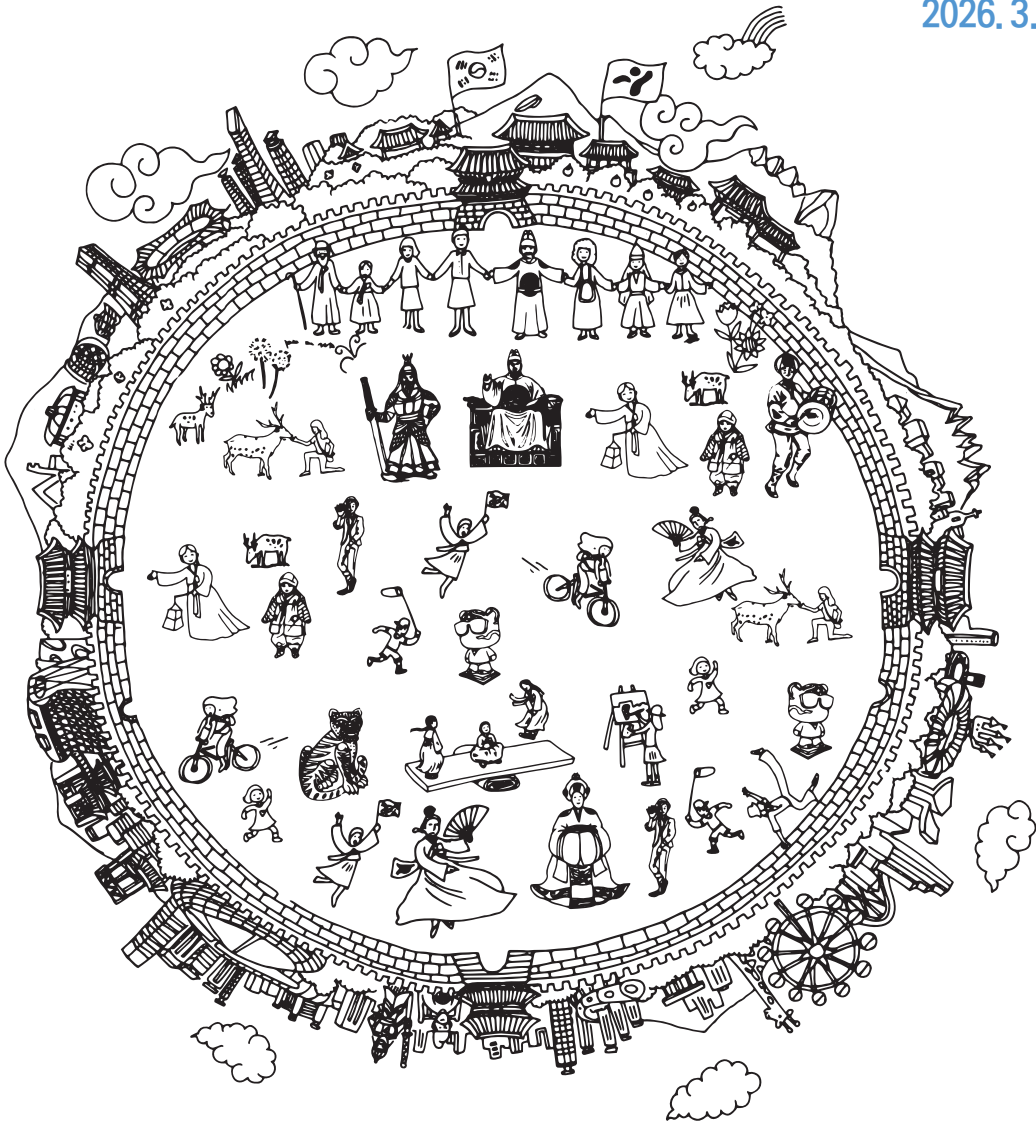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37호
2026. 3. 30.(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10027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10028호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10029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1003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10031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10032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
제1003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10034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10035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10036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10037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10038호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10039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10040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0
제10041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10042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10043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10044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10045호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10046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10047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제1004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10049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10050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1005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10052호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10053호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	69

제10054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10055호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10056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제10057호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10058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10059호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84
제10060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10061호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제10062호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10063호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10064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10065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10066호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1006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제10068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10069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10070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10071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제10072호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10
제10073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제10074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6
제10075호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10076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제10077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1007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제10079호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7
제10080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제10081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10082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33
제10083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제10084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제10085호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39
제1008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43
제10087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5
제10088호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7
제10089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9
제10090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1

제10091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제10092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5
제10093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7
제10094호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159
제10095호	서울특별시 세입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제10096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4

◆ **공 고**

제2026-1058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170
------------	-----------------	-----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27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을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5분의 1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2명 이상.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5분의 1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자동차전문정비업 :”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5분의 1 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로 한다.

라. 원동기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제6조제2호 중 “2미터이상”을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 요원에 대한 자격인정 범위 확대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 요원 자격 기준 인정 범위 확대
(제5조제1항제2호)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 요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자동차 정비기능사 외에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와 자동차보수 도장 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나.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인원 기준 완화(2명→1명)(제5조제1항제2호 라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28호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의정회는” 을 “의정회의” 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를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로 한다.

제8조 중 “범위안” 을 “범위 안”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보조금 교부 근거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조금 교부 근거 법령 수정(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29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5조원” 을 “27조원” 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호 중 “서울시” 를 “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25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확대함(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3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강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를 ““한강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 를 “각 목” 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원이용시설 (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인명구조선, 그 밖의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체육시설	가.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야구장(어린이, 성인),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풋살 경기장, 축구교육장, 우드볼장, 국궁장,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 X-게임장, 론볼링장, 피클볼장, 파크골프장,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나.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
3. 휴양시설	가. 캠핑장, 분수대, 강변물놀이장, 수영장, 선텐장, 전망덱터, 낚시터 (단, 한강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4. 학습시설	가. 자연학습장, 물고기길, 생태학습지원시설(수변생태학습센터, 한강야생 탐사센터), 여의도 갯강 방문자센터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
5. 시민편의시설	가. 매점 및 카페형 매점시설 나. 교량전망카페, 독점 자별레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6. 유희시설	가. 어린이놀이터, 자전거공원(MTB코스장, 익스트림장, 자전거교육장 등), 드론장, 레이싱경기장, 자전거대여소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시설
7. 공원편의시설	가. 주차장, 화장실, 자전거보관소, 조명시설, 음수대, 그늘막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8. 조경시설	가. 잔디밭, 꽃단지, 유채단지, 갈대밭, 보리밭, 초지, 호안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9. 그 밖의 시설	그 밖에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에 설치된 시설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선 박	한강 르네상스호	1회 승선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3,000~5,000원 5,000~10,000원	1. 운항노선은 서울특별시 미래환경본부장이 정한다. 2. 2시간 초과 승선시에는 매 추가시간마다 1시간 승선료의 50~90%를 추가한다.	
		1회 대여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4시간 이내, 70명 기준) ※아동 운항 가능		210,000~350,000원 350,000~700,000원		
여의도 물빛무대		1회당(3~4시간) · 문화공연 · 그 밖의 대관		500,000~820,000원 1,000,000~1,640,000원		
서울 수상 레포 츠센 터	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1.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에서 결정 하고, 해당 이용료를 공고한다. 2.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2시간 이내) 기준이며, 교육 프로그램(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 3.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 다만,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면제한다. 4.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5.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각종 행사(국제대회, 축제, 공연 등)가 개최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7,000~35,000원		131,000~460,000원		
	육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6,000~18,000원		119,000~302,000원		
	장비보관함	1일	4,000~10,000원			
		1개월	50,000~110,000원			
		1년	280,000~420,000원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어린이 (6~12세)	청소년 (13~18세)		성인 (19세 이상)
	체험	무동력	8,000~30,000원	10,000~36,000원		10,000~48,000원
		동력	20,000~50,000원			
교육	무동력	40,000~100,000원				
경사면 (슬립웨이)		1일		6,000~20,000원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축 구 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독점 사용시 월간 경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10,000~40,000원 200,000~280,000원
어린이야구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독점 사용시 월간 경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7,200~10,000원 100,000~150,000원
성인야구장	면당 1회 3시간 이내, 단체독점 사용시	20,000~87,000원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시 월간 경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3,600~5,100원 68,000~96,000원
테니스장 피클볼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7,000~11,000원 ※ 토요일공휴일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 ※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공휴일 야간시간에는 가산하지 않음.
	월간 경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108,000~154,000원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체육경기) 시	70,000~150,000원
국궁장	1일(3시간 이내)	4,000~7,000원
	코스체험 1회	4,000~7,000원
	1개월	40,000~60,000원
축구교육장	1개월(월 4회, 주 1회 50분 기준)	60,000~80,000원
배드민턴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독점 사용시 월간 경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1,000~3,000원 27,000~38,000원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장	어린이(6~12세) ·1회	1,000~1,500원
	청소년(13~18세) ·1회	1,500~2,000원
	성 인(19세 이상) ·1회	2,000~3,000원
파크골프장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1회당	2,000~3,000원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1회당	3,000~4,000원
	성 인(19세 이상) 1회당	4,000~6,000원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원
비 고 :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하되 일출·일몰시간과 조명시설 유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조조시간 : 06:00~09:00)		

3. 휴양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캠핑장	캠핑장	1면당(1박 기준)	13,000~25,000원	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한다.
	글램핑장	1면당(1박 기준)	80,000~120,000원	
	캠핑시설	개소당(바비큐, 캠프파이어 등)	5,000~20,000원	
물놀이장	어린이(6~12세)		1,000~1,500원	
	청소년(13~18세)		1,500~3,000원	
	성 인(19세 이상)		3,000~3,200원	
수영장	어린이(6~12세)		2,700~3,800원	
	청소년(13~18세)		3,600~5,100원	
	성 인(19세 이상)		4,500~6,400원	
숙박시설 (전망호텔)	1박(4인 이하 기준)		750,000원 이하	극성수기(세계 불꽃 축제 등) 시 이용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학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기획전시실	기본(5일 이내)	160,000~250,000원	
	1일 추가시	21,000~32,000원	
강 연 홀	1시간 기준	9,100~12,000원	
	1일 사용시	91,000~120,000원	

5. 시민편익시설**6. 유희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자전거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2,700~3,800원	
	· 2인승	5,400~7,600원	
	· 다인승	15,000~22,000원	
	· 전기동력	8,000~11,000원	
	· 기타	4,000~6,000원	
	추가요금(10분당)		
	· 1인승	500~700원	
	· 2인승	1,000~1,500원	
	· 다인승	2,500~3,500원	
	· 전기동력	1,300~1,800원	
	· 기타	1,000~1,500원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1회당(4시간 기준) · 단체독점사용	45,000~54,000원	
------------------------------	-------------------------	----------------	--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1회주차(1구획)		1일주차	월정기권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한강공원	최초 30분 1,000~3,000원	300원~400원	13,000~19,000원	여의도샛강쪽(4, 5주차장) 72,000~100,000원 한강본류호안쪽(1, 2, 3주차장) 91,000~120,000원
그 밖의 한강공원	최초 30분 1,000~1,500원	200원~300원	9,100~12,000원	45,000~64,000원
비 고 1) 이용료 정수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여의도한강공원 1, 2, 3, 4, 5주차장 중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8. 기 타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영화촬영	1회당 - 주 간 (08:00~18:00) - 야 간 (18:00~익일 08:00)	100,000~160,000원 210,000~330,000원
녹 화	1시간당 초과시간당	23,000~33,000원 11,000~16,000원
잔디말행사	100명 이상 독점 모임행사시 2시간 기준 1㎡당	30~40원
도로점용 행사	5km당(1일 이내) 행사집결지에 대하여는 잔디말행사는 별도로 정수함	45,000~64,000원
입 장 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 (콘서트, 전시회 및 그 밖의 공연)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
서울함공원	어린이(6~12세)	700~2,000원
	청소년(13~18세)	1,500~3,000원
	성 인(19세 이상)	2,000~4,000원
	단 체(20인 이상)	
	- 어린이(6~12세)	500~1,500원
	- 청소년(13~18세)	1,000~2,000원
	- 성 인(19세 이상)	1,500~3,000원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한강공원 내 피클볼장을 도입하기 위한 이용 기준을 추가하고
- 장기간 조례 미개정과 제도·이용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조문의 해석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미운영 시설인 ‘그 밖의 선박’ 조항 삭제(별표 2 제1호)
- 나. ‘테니스장’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신규 시설인 ‘피클볼장’을 추가(별표 2 제2호)
- 다. ‘강변물놀이장’을 ‘물놀이장’으로 문구를 수정 및 ‘전망호텔’은 불필요한 하한액을 삭제하고 상한액만 설정(별표 2 제3호)
- 라. 한강공원 내 미설치 시설인 ‘야외원형극장’과 타 요금제의 적용이 가능한 ‘야외무대사용’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별표 2 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31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
2.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제2조제4호 중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를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 중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을 “다음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중 제2항제10호 이외의 사항
-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직한 자” 를 “재직인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 를

“사람으로서” 로, “경력자” 를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로” 를 “사람으로” 로, “있는 자” 를 “있는 사람”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청원법」 제5조” 를 “「청원법」 제5조” 로 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25조” 를 “제27조” 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27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 을 “제8항” 으로 한다.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시민참여옴부즈만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민참여옴부즈만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6항제2호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능 수행을 명확히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및 해촉 기준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기능에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내용 명확화(제1조 ~ 제3조)
- 나.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강화(제27조제6항 및 제7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32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무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이하 "서울특별시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만 해당한다)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

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 추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세입 재정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심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모범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유공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모범납세자 등의 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등 제공
2.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 부여
3.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또는 건강검진비용 등의 할인
4. 시에서 출연한 문화예술 기관에서 정하는 공연에 대한 공연료 할인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분의 50 감면
6. 시 주관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7.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
8. 기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할인 등 우대 혜택
9.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3. 1년간 시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4. 3년간 세무조사 유예
5. 2년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제6조(지원의 배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보가 있는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4호의 지원을 배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을 배제한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세 등을 추징한 경우
2.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 연루가 확인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탈세 제보 및 탈세 여부의 조사 또는 확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해당 지원기관에 지원배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받은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해당 면제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모범납세자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의 체계 등을 현행화 하여 업무 및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문의 체계를 선발 → 지원 및 지원의 배제 → 심의 순에서 선정 → 심의 → 지원 및 지원의 배제로 업무 순서에 맞게 재정리(제2조 ~ 제6조)
- 나. 유공납세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전자납세자 규정을 삭제
 - 유공납세자 선정 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자를 추가하여 유공의 의미를 강화하고 자치구 추천 규정 신설(제2조 ~ 제3조)
 - 전자송달·전자납부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던 전자납세자 제도가 '23년 마일리지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실익이 없어 삭제(제2조)
- 다.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혜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가능한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제4조 ~ 제5조)
 -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 혜택을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삭제(제4조)
 - 공직선거법 질의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모범납세자 지원 혜택 확대에 필요한 지원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추가(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3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건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 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유재산 중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총괄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시유재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재산의 수의허가 시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여 사용허가 제한 사례를 방지하고, 장기간 공실 등 활용이 어려운 공유재산의 민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를 반영하여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제18조의2 제2항)
- 나. 유휴재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중 재산관리총괄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시유재산을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부료율을 별도로 정하는 조항 신설(제26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34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를 “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 관련 법령을 고려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초에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를 “4월까지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마을버스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 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제13조의 제목 “(운영)”을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마을버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마을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등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 운영체계의 조정·개선에 관한 사항
5. 시민 만족도, 인센티브 평가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사업자는 차량 고장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운수종사자가 신속히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

차 및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를 법령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재정지원 업체 선정기준과 재정지원 기준액을 매년 4월까지 정해 예산을 편성하며, 마을버스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이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평가하고, 환경친화적 마을버스 보급에 대한 노력과 행정지원 절차를 추진하며, 사업자는 비상상황 시 운수종사자의 대응매뉴얼 마련과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시 관련 법령을 고려하도록 함(제3조제3항)
- 나.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액을 매년 4월까지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제3조제4항)
- 다. 시장은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함(제4조제4항 신설)
- 라.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마을버스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 지원절차를 추진하도록 함(제10조제10항 신설)
- 마. 마을버스 관련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회의소집 요건을 신설함(제13조제1항, 제2항)
- 바. 사업자는 차량 고장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의 안전 확보 및 대피조치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17조제6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35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용역 제안부서”란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각 부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를 “연구용역 제안부서”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상임위원회”를 “연구용역 제안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임위원회”를 “연구용역 제안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과”를 “연구용역 제안부서”로, “작성하여”를 “작성하여 법제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과는 그 보고서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과제 제안자는 의회사무처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음
- 이에 과제 제안자의 범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하여 상설특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 등 소관 전문분야에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구용역 제안부서’ 정의를 마련하여 연구용역 과제 제안 부서 범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함(제2조제3호 신설).
- 나. 연구용역 제안부서의 정의를 하위 조항에 반영함(제6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 다. 그밖에,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의 작성 대상과 제출부서를 명확히 표현함(제10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36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 등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300만원 이상”을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 부과 기준 (제9조 관련)

위 반 사 항	위반내용 및 횟수	과 태 료
1. 서류 미제출	가. 미제출 1회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나. 미제출 2회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2. 출석요구 불응	가. 불응 1회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나. 불응 2회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3. 선 서 거 부	가. 거부 1회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나. 거부 2회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4. 증 언 거 부	가. 일부거부 1회	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나. 일부거부 2회 이상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다. 전체거부 1회	2백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라. 전체거부 2회 이상	3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바탕으로 누구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 시, 출석요구 대상자가 장애 등으로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고 있어 장애인으로 하여금 요구 내용의 인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출석요구 대상자의 장애 여부 등 여건에 맞추어 출석요구서의 작성·발송 및 전달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고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그밖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의회에 권고한 ‘17개 광역시, 도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 25.5.)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조사 과정에서의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증인 등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함(제8조제3항 신설).
- 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 함(별표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37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청소년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0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38호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소년 등 문화취약계층의 전통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사업
4. 전통문화 관련 민·관·학 등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구현 및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 등 문화취약계층의 전통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제3호)
- 나. 전통문화 관련 민·관·학 등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39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 (방수 및 방근기준) ① 주택단지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와 같이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의 식재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한다.

1. 외벽과 지하 시설물, 천장, 바닥 등에 방근조치를 실시하여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한다.
2.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미터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② 지하주차장 천장, 바닥,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조경의 설치, 공동주택의 성능 및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등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주택단지에서 식물 뿌리로 인해 배관 손상, 방수층 손상, 도로 변형 등 건물 구조체 또는 설비시설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 주택단지에서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방수·방근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기타 사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주택단지에서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방수·방근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기타 사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함(제8조의5)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40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라인 위해제품(危害製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온라인 위해제품”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따른 규격·품질 및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유통되는 제품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

4. “사업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를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피해의 발생 현황, 사회적·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제품명 및 모델명, 위해의 내용, 유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구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및 피해의 발생 현황, 향후의 전망
 3. 제5조에 따른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나 국공립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규격·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 요청 등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조사·검사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 위해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2. 온라인 위해제품에 대한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3.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4.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창구 운영
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피해 구제 절차 연계 지원
6. 그 밖에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와 그에 따른 피해 발생 현황, 서울시의 예방·지원 시책에 따른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증개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및 테무(Temu)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에 불과하고, 협약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C-커머스(China Commerce)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제품, 물리적 안전기준 미달 제품 등의 유통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유통되는 위해제품에 대해 서울시차원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등에 대해 규정함(제5조)
- 라.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제6조)
- 마.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대해 규정함(제7조)
- 바.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제8조)
- 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41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흙막이 계측관리”란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하는 오차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스마트 계측”이란 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지원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법을 말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흙막이 스마트 계측관리)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증가하여 지하수위 변동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를 포함시켜 지하개발 과정에서의 지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흠막이 스마트 계측 관리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하개발사업에 따른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 시, 시장으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뿐만 아니라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 나.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흠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42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고, 두 차례만” 을 “하고,” 로, “있다” 를 “없다” 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5.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가유산위원회의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순환성과 책임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제37조제3항제5호)
- 나. 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 삭제(제37조제4항)
- 다.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제39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43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제 지원은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

1. 해당 축제 지원으로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가 우려될 경우
2.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 축제 지원 사업은 지역문화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그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축제 지원 대상을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한정함(제16조제2항)
- 나. 공익성 훼손 우려가 있거나 사익 추구 목적이 예상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제16조제2항제1호)
- 다.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제16조제2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44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을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태권도단체에 한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이나, 상위법령에 따른 관내 태권도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하여 현실적인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상위 법령에 규정된 태권도 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태권도법에 따른 태권도단체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제10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45호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임기·해촉”을 “해촉”으로 한다.

1. 문화유산·주택 등 풍납토성 관련업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당연직·임명직 관련 조항이 없어 전원 위촉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의견 반영과 원활한 위원회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
- 현행 조례상 미비한 위원 임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당연직 위원’에 대해 명시함(제5조제3항)
- 나. ‘임명직 위원’에 대해 명시함(제5조제3항제1호 신설)
- 다.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제5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46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장례문화”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7조의5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1조”를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71조”로,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운영될”을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반려동물장묘시설”을 각각 “공설동물장묘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예절,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반려동물 ‘장례문화’ 를 정의함(제2조제17호 신설).
- 나. ‘반려동물장묘시설’ 을 ‘공설동물장묘시설’ 로 용어를 수정함(제30조제1항).
- 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정보 제공, 교육·홍보 등 반려동물 장례문화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30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47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차장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조치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주차장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단, 시립체육시설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 위탁대상자에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되 시립체육시설에 설치된 공영주차장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택시운수종사자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무료주차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증가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차장 관리자의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조치 및 사고 대응 체계의 근거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택시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 공영주차장 30분 이내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제7조제1항제15호다목).
- 나. 주차장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9조의2제5항 신설).
- 다. 주차장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도록 함 (제9조의2제6항 신설).
-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단, 시립체육시설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한함)를 신설함.(제10조제1항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4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만든다” 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놀이환경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은 어린이의 놀 권리와 쉼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생활 기반으로 서, 놀이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관리 단계까지 고려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놀이환경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이용 과정에서의 의견 반영, 사고 예방 등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임.
- 이에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사업 추진·운영 과정에 관한 관리 기준을 보완하여, 어린이가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놀이환경에서 놀이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놀이환경 조성 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추가(제5조제2호)
- 나.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에 기후환경 변화 고려에 관한 사항 추가(제5조제6호)
- 다.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근거 마련(제8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49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관리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체계
 - 2.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
 - 3. 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대응 체계
 - 4. 그 밖에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화재·정전·침수 등 디지털재난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이에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의무와 그 내용을 명문화하여, 서울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함(제7조제4항)
- 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에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단계별 대응·복구 절차, 연속적 운영을 위한 보호·대응 체계 등 필수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50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전거이용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를 “(시장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음주상태”를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강구와”를 “마련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 시장과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내·외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하천 및 공원 등 시민 여가·녹지 공간과 연계하여 경관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5.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동선 구분 및 분리 설계 방안

제4조제4항 중 “자동차를”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음주상태”를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 위치 선정, 규모 및 유지관리기준

제9조제1항 단서 중 “민간단체” 를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 로 한다.

제12조의2제7항 중 “강구” 를 “마련” 으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강구” 를 “마련”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거하여” 를 “따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전거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상태 외 약물운전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추가하고, 자전거와 자동차 간 안전거리 확보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사문화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 용어를 순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설치된 자전거 시설 이용을 독려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기준, 위치 및 유지관리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는” 을 “뜻은” 으로 수정하여 용어 정의의 정확성을 높임(제2조).
- 나. 정의된 용어를 조례 내에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정비함(제2조, 제9조).
- 다. 조 제목을 간결하게 하여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함(제3조 제목).
- 라. 여러 항이 나열되지 않는 조문의 제1항 번호를 삭제하여 조문의 간결성을 확보함(제3조의2).
- 마. 자전거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뿐 아니라 약물 영향도 포함하도록 문구를 보완함(제3조제4항, 제4조제5항).
- 바. 기존의 포괄적 표현을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를” 로 명확히 규정함(제4조제4항)
- 사.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를 신설함(제4조제6항 신설)
- 아.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기준, 위치 선정, 규모 및 유지관리기준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제6조제4호 신설)
- 자. 유효기간이 지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에 대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조항을 삭제함(제12조의3제2항제7호 및 제3항)
- 차. “강구” 를 “마련” 으로, “의거하여” 를 “따라” 등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 변경함(제12조의2, 제15조, 제1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5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 4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에”를 “시에”로, “대하여도”를 “대해서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요원 등에 대해서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부속의원(의무실, 치과, 한의원)은 진료, 처방 등 1차 진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직원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부속의원의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서울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직, 시의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타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요원은 서울시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의원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과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속의원 진료 등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형평성있는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요원 및 파견 공무원의 부속의원 이용 근거 조항 신설(제3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52호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하 “사회보험”이라 한다) 사회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기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을 구체화함(제9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53호**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직 중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이하 “퇴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란 퇴직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공무상 재해로 퇴직하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건강진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한 사람

제4조(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경우 시장에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퇴직소방공무원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그밖에 특수건강진단의 시행 주기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퇴직일	년 월 일
재직기간	년 월

2. 구비서류 첨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본 건강진단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범위: 타 관계법령(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여부, 특수건강진단 지정 기관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인사기록카드 열람 요청 및 동의

본인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자격심사 및 행정처리 목적 상, 인사기록관리자가 본인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1. 본 동의서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건강진단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서입니다.
2.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수검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범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무원 연금 종료시까지

○ 정보 활용기관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및 소방관서)

본인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검진결과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및 소방관서)가 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검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독가스, 트라우마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퇴직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방공무원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직 중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54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전거 이용자”를 “자동차등(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및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의 운전자”로 하고, “법령”은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표창, 홍보,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약물의 정의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운전자의 안전운행 준수 의무를 시민의 책무로 명확히 하며,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행정적·예산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인용하는 ‘약물’을 변경된 「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에서의 ‘약물’로 함(제5조제2항제2호)
- 나.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운전자의 안전운행 준수 의무를 시민의 책무로 명시함(제5조제3항)
- 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표창, 홍보,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2조제3항 신설)
- 라. 그 밖에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수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55호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모 등” 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로의” 를 “효의” 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부모 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이하 “효행수당” 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효행수당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효의 달 행사 지원 등)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효의 달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신설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역할과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효행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경로 중심 표현을 효 중심으로 정비하고 ‘효의 달’ 행사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모 등" 정의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3호)
- 나.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으로 효행수당을 신설함(제7조)
- 다. 효의 달 행사 지원을 신설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56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시민” 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시민”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표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성계획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 공표 방식을 ‘서울시보 게재’로 규정함(제4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57호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제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면제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사회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생애전환기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지만, 현행 조례에는 이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 이에,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애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규정(제6조의4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58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보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 14조의2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의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 나.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59호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2.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3.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창업지원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성과의 활용)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결과를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의 창업지원 정책과 지역창업전담기관 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협력사업 추진,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하여 창업지원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창업 기업 발굴·육성 및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창업지원 정책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제3조)
-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5조)
- 라. 협력 및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창업지원 정책 수립·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60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의무를 다”를 “의무 및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게을리 하였을”을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충전시설 사업자 등 입주업체들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선량한 입주업체 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서울시는 입주업체들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이를 통해 협약 불이행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영차고지 내 부적절한 사용 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시설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입주업체의 협약사항 의무 이행 관련(제6조제1항)
- 나. 입주업체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관련(제8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61호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대표자를 말한다.
2. “예비청년창업자”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창업자”를 “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청년창업자’와 ‘예비청년창업자’의 정의를 관련 법에 따라 규정하고 인용 조문의 현행화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창업자’의 정의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규정함(제2조제1호)
- 나. ‘예비청년창업자’의 정의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규정함(제2조제1호)
- 다. 안 제2조 적용범위를 수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62호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청년과 청년 예술인의 범위를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연령 기준이 상이하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자치법규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조항 번호에 오기가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 사항에 따라 규정함(제2조제1호)
- 나. ‘청년 예술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에 따라 규정함(제2조제2호)
- 다. 조항번호를 수정함(제5조제3항~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63호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공단체”를 “서울특별시의회회장, 공공단체”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1”을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예시민 선정 및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에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후보자와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을 시의회(의장)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명예시민 후보자 및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시의회 추천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 시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의회의 검토 효율성을 높이고 명예시민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3조 중 후보자 추천의 주체를 “공공단체” 에서 서울특별시 의회의장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공공단체” 로 개정함(제3조 개정)
- 나.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 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토록 함(제4조제3항 신설)
- 다.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 대상자를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잘못 표기된 단어를 수정함(제8조제4항제2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64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령인 「청년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등과 상이하여 규정하고 있어 청년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인용하여 청년의 나이 기준을 통일되게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함(제3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65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의2에 따른 스포츠테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2025년 7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으로 시장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로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스포츠데이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가(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66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리청”이란 도로조명, 주택가 보안등, 공원등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명설비를 설치·관리할 권한을 가진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목적”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으로, “조명환경 관리지역을”을 “조명환경관리구역을”로,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을”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지역의”를 “관리구역의”로, “관리지역별”을 “관리구역별”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도로조명”을 “관리청은 도로조명”으로, “개별관리”를 “개별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리청은 안개”를 “안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제6조는 동일한 법정 개념을 규정하면서도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혼용하고 있어 상위법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이에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통일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상위법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제24조제1항은 점등·소등시간의 통합·개별관리 주체가 본문에 명시되지 않고 단서에만 ‘관리청’이 등장하여 권한·의무의 귀속이 불명확하므로, 운영주체를 ‘관리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단서의 조정권 규정도 본문 주체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하고, “관리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정비하여 용어를 일괄 통일함
- 나. 제24조제1항의 점등·소등 시간 운영(통합관리 또는 개별관리)의 행위주체를 ‘관리청’으로 명시하고 이에 “관리청”의 정의를 제2조제6호에 신설하여 기상 상황 등 안전상 필요에 따른 점등·소등시간 조정 권한을 같은 주체(관리청)로 일관되게 규정하도록 문장구조를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6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5호 및 제18호 중 “관련시설”을 각각 “관련 시설”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생태계보호지구안”을 “생태계보호지구 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의료시설중”을 “의료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 중 “관련시설”을 각각 “관련 시설”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제3의2호”를 “제3호의2”로 한다.

제65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

마.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공동위원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상위 법령 조항 번호를 잘못 인용하거나 띄어쓰기 등 용어가 관련 법령과 상이하게 표현되어 있어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오류 조항 내용을 수정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의 표현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표현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용어, 띄어쓰기 등 정합성 확보

- “각호”를 “각 호”로 함 (제33조)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함 (제34조제1항제12호, 제40조제1항제10호)
-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 함 (제34조 제1항제12호가목)
- “관련시설”을 “관련 시설”로 함 (제34조제1항제13호, 15호, 18호, 제40조제1항제12~13호, 15호)

나. 관련 법령 인용 오류 수정

- “제3의2호”를 “제3호의2”로 함 (제51조제2항제2호)

다. 관련 법령의 약칭 표기 (제65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함 (제65조제2항제3호가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함 (제65조제2항제3호마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68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4조”를 “제6조”로 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사업의 개념과 범위를 제6조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 이를 제4조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조문 간 체계 정합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현행 조례의 체계에 맞게 정정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조문의 용어를 관련 법령에서 통용되는 표준적 표현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령 체계상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또한, 일부 조문에 사용된 용어가 관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상이하므로 이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도심 기본계획 사업의 인용 조항을 제4조에서 제6조로 변경함 (제7조)
- 나.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 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 로 변경함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69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출석의원” 을 “출석위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10조제1항은 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로 표기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해당 표현은 명백한 용어 오기로서 해석상 중대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10조제1항 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정비함(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70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관계서류 인계용 외부저장장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 과소토지 기준면적에 대한 조례위임 사항이 개정·삭제됨에 따라 조례상 과소토지 기준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시행자가 인계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의 제출 형식을 마이크로필름 및 CD-ROM 등 구시대적 매체로 한정하고 있어 전자적 저장매체로 현행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개발법 조례 위임사항 소멸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제6조)
- 나. 도시개발사업 완료·폐지 시 인계자료 제출방식의 현행화(제26조제1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71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회의록을 요약하여”를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사업자”를 “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조례상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와 “공공디자인 사업자”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조례 용어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통일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조례의 회의록 작성·비치 방식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디자인 사업자”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함(제24조제6항)
- 나. “회의록을 요약하여”를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로 개정하여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함(제14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72호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전문가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4.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이공계[이학(理學)·공학(工學)]을 말한다] 대학등(「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영 제12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교육이나 훈련·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취업·재취업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 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시장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차원에서 경력단절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등에도 중요한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됨
- 특히, 여성에 대한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바이오·의료기술 등이 접목된 여성기술혁신(Femtech) 산업 또한 급성장하고 있음.
- 하지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의 경우 여성과학혁신 산업에 자리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 등이 실질적으로 부족하여, 산업 성장에도 한계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 다.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제5조).
- 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제6조).
- 마.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제7조).
- 바.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9조).
- 사. 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지원(제12조).
- 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10조).
- 자. 취업·재취업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11조).
- 차. 지역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함(제12조).
- 타. 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제13조).
- 카. 표창에 대해 규정함(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73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지원시설에 두는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공무원의 교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외국인주민은 40만 명 이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포용적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기존 센터 운영이 구마다 상이하며, 인력·예산 차이로 서비스 품질 격차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센터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여 서비스 품질 균형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기준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을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등의 관리 지원 및 보수교육 조항 신설 (제18조)
- 나. 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 (제2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74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을 “관련한 사항과 인공지능 활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서울시에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를 비롯해 각종 산업 등의 예측할 수 없는 복잡화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에 활용 등에 대한 실질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시안전 기본계획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75호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6호, 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7.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9. 주거복지 전문인력 및 전문상담원 양성 및 배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사항을” 을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 사용료·물이용 부담금 등 공동관리비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 을 “입주자” 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주자의 거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주체 확대 및 형평성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제5조제1항)
- 나. 보건복지서비스 관리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제7조제1항)
- 다.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대상을 모든 입주자로 확대함(제9조제3항)
- 라. 재원 지원에 있어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조항 규정함(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76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다양한 청년 정책(일자리, 주거, 정신 건강, 금융 등)에서 만 39세까지 정책 혜택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는 만 34세 상한을 뒤 정책 간 연령 기준이 불일치함.
- 이러한 기준 차이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연령을 타 정책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울시 청년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77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9조와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선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본부 중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확산하는 데 이바지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와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을 것
 2. 서울특별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점 수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②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와 그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 대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인증서 및 인증패 제공
2.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홍보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4.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노무·경영 컨설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폐업, 부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④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

점 수,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인증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이하 “평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평가운영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1.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평가 및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가맹거래사·변호사·세무사·기업인 등 가맹사업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⑤ 평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도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소자본 창업의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임.
- 서울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조성하고 상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자, 법규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202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또한 서울시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근거 규정과 평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지원내용, 선정취소 및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 나.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7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금지행위 관리·감독)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 단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죽목(竹木)을 베는 행위, 흙과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또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8조(녹지의 점용 허가 등)에서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 또는 공사에서 나무를 베는 등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규정하고자 함.
- 법령에 따라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바, 관련한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반영함(제22조제1항)
- 나. 허가받지 않은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또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함(제22조의4)
-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늘리거나줄일 수 있도록 규정함(제23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79호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청년 리더 양성 및 활동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새마을운동조직” 정의에서 “그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는 청년미래가치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자치구에 “청년새마을연대” 단체가 운영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도 새마을운동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조직이나 미래세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명시화하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위와 미래세대 계승을 위한 청년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2조(정의)에 “청년새마을연합회” 정의 신설(제2조제6호)
- 나. 조례 제3조(사업지원)에 청년층 지원사업 근거 마련(제3조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80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에 ‘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 추가(제4조제2항)
- 나.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의 업무에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을 추가(제12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81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자녀를 출생하거나 출생예정인 신혼부부”를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임대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제7항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대상·방법·절차·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30”을 “4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제7항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첫째, 민간임대주택 보증금의 지속적 상승으로 현행인 최대 6천만원의 지원한도로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중소형 주택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실효성 및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려고 함.
- 둘째, 극심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중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및 매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신혼부부’의 의미를 명확히 함(제8조제6항)
- 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및 임대유기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의 매각 근거를 명시함.(제8조제7항 및 제8항)
- 다. 임대유기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의 매각 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매매대금 할인 근거를 명시함.(제8조제9항)
- 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을 100분의 4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82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제10조의4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연도에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

나.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00시간 이상인 자

제1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지원은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제10조의4제2항제2호 중 “누적 10,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

5. 근조기 지원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특히, 직전 연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와 장기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 누적 봉사시간이 많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혜택 및 근조기 지원 등 실질적인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로 명확히 규정함(제2조제6호).
- 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중 일부 항목을 누적 10,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한정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함(제10조의4제2항 단서)
- 다. 누적 10,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 및 근조기 지원 근거를 신설함(제10조의4제2항제4호 및 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83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조례 제518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적용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조경 등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제8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등의 조치 범위는 건축위원회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는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조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조례로 조경 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조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 ‘시설현대화 사업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해당 부칙 조항을 개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류 공간을 확보하고 도매시장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조례 제518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적용례)를 개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경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84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노동자”를 “장애인, 노동자”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책임성과 이행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25.11.)하여, 이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 나.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 및 개선권고 규정 신설(제9조제4항 신설)
- 다. 위원회 위원에 장애인 추가(제10조제5항)
- 라. 기타 정부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리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85호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정의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 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기부금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포상 등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기부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서울특별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명예적인 예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자 예우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우를 받는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를 철회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한 경우
2. 범죄 또는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예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로 정하는 경우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호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유공 표창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이내,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책무, 기부의 날·기부주간 규정 등이 신설된 바, 주요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예우 원칙과 철회 기준을 마련하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구체화 함으로써 공익과 공공의 신뢰에 기반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제3조)
- 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의 날, 기부 주간,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함(제5조)
- 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예우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제6조~제7조)
- 마.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함(제8조~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8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준설”을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재해 위험지구가 아닌 경우에도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맨홀에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정책 대응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를 중심으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제7조의 제목을 (하수관로 준설 등)에서 (하수관로 점검 등)으로 변경함(제7조 제목).
- 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87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보조”를 “보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사회주택의 보증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 보호 및 사회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주택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함(제3조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88호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보조”를 “보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동체주택의 보증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 보호 및 공동체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체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함(제7조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89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의한” 을 “의한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에서 나아가 지방정부·지방의회 중심의 실무적 교류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관계 형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인(재외동포) 출신 외국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교류는 언어·문화적 공감대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정책교류를 촉진할 수 있음.
- 이에 한인 출신 외국 지방의회 의원 등을 초청외교활동의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의 교류를 의원외교활동의 중요한 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중 초청외교활동의 상대방인 ‘외국인사’의 범위에 한인 출신 외국 지방의회 의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외교·교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 초청 대상에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 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을 추가함(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0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립체육시설의”를 “체육시설의”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체육시설 관리·운영”으로,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을 “체육시설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시립체육시설”을 각각 “체육시설”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중 “시립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10조제1호마목 본문 중 “시립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립체육시설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상생 필요
- 조례상 혼용되고 있는 시립체육시설·체육시설의 용어 일원화

2. 주요내용

- 가. 시립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제3조제3항)
- 나. 조례 상 혼용되고 있는 시립체육시설·체육시설 용어를 같은 조례 제1조의2(정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로 일원화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호 마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1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선지정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선정한 일자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2항 제7호 중 “노인 일자리”를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 등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 자리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선정하여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선지정일자리 정의 추가함(제2조의4)
- 나. 추진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그 밖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으로 수정함(제4조 제2항 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2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창의적·혁신적 건축디자인이 시공 과정 중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혁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협약 체결 등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중 존치관리구역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④ 시장은 사업 대상지를 수시로 접수하여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참여 기회 및 신청대상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창의적인 건축문화 확산을 통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제3조제2항)
- 나.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구역과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구역을 명시하여 대상지를 확대함(제5조제2항 및 제3항)
- 다. 사업 대상지 신청을 수시로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5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3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0만 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으로, “거주하는”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임산부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나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임산부의 자녀 수에 따라 교통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므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교통비를 1인당 70만 원 이내에서 100만 원 이내로 확대함(제4조의4제1항).
- 나. 교통비 지원 조건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함(제4조의4제1항제1호).
- 다. 교통비 신청 조건을 출산 후 6개월까지 확대함(제4조의4항1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4호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6년 3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양성
2. 연구개발
3. 지식재산권의 보호
4.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
5.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6.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한류산업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K팝, K드라마와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 의료, 뷰티, 식품 등 다양한 연계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
-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제1조)
- 나.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 가능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시함(제4조~제5조)
- 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6조~제7조)
- 마. 서울특별시장의 약칭을 명시함(제3조)
- 바. 불필요하게 반복 사용되는 ‘한류산업등’의 용어를 정비함(제5조)
- 사. 오타자를 정비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5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사람에게는 제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를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로, “ ‘체납액’ ”를 “ “체납액”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를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를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장급(시는 3급)”을 “과장급(시는 4급)”으로, “4급”을 “5급”으로,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그징수액”을 “그 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를 “1,000분의 43”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2호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매분기초”를 “매분기 초”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문언을 일치시키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체납시세 징수포상금의 대상에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을 제외하고(2조제4항)
-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문언에 맞게 “납부독려”를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개정(제2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6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8)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1)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는 ‘실적’ 만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 으로만 평가	
6. 그 밖에 사항		2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에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8점)

- 공금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에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에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채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과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25. 12. 10.)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평가항목의 세부항목명과 평가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로 변경(별표 1)
- 나.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다른 평가항목에서 적용하는 순위 간 편차의 1/2을 적용하는 규정 삭제함(별표2)
- 다.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의 배점을 6점에서 8점으로 하고,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의 배점은 3점에서 1점으로 변경함(별표 1 및 별표 2)
- 라. 평가항목 5(금고업무 관리능력)의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을 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으로 세부항목명 변경함(별표 1 및 안 별표 2)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58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실 · 본부 · 국
조례안 (5건)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4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동의안 (12건)	1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국 (재산관리과)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경제실 (첨단산업과)

구분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실 · 본부 · 국
	4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	미래한강본부 (수상교통사업과)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영구시설물축조)’ 동의안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6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실 (돌봄복지과)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복지실 (고독대응과)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주택실 (주택정책과)
	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주택실 (주택정책과)
	1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11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12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교통실 (도시철도과)
의견 청취안 (3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균형발전본부 (도시경비과)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운영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상 근거 마련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책임 강화(안 제4조 및 제5조)
- 나. 적극행정 우수자 대상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
- 다. 형사 소송비 지원 및 수사기관 의견 제출 제도 신설(안 제7조의2)
- 라. 재난·안전 분야 적극행정 사후 추인 등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권한 확대(안 제8조)
- 마. 적극행정위원회 소집 절차 개선 및 감사위원장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신설(안 제14조 및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6. 2. 5. ~ 2026. 2.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정혜윤 (☎2133-318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제7조 중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

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2호) 중 “영 제12조”를 “영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6.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7.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8.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 중 “위원장”을 “시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그 소속 공무원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감사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감사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조례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제2조(정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u>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영 제5조</u> -----

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
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 6. (생 략)

③ · ④ (생 략)

제7조(적극행정 포상 등) 시장은 적
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
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
라 포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제7조의2(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
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

5.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적극행정 포상 등) -----

-----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
금을 지급----- 다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따른다.

1.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사
람

제7조의2(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호 및 제3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신 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¹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 . 다만, 제3
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
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
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
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
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
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
-----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
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
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
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신 설>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7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 설>

<신 설>

<신 설>

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3. 영 제12조제1항-----

4.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추인에 관한 사항

<삭 제>

2. (현행 제4호와 같음)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건의에 관한 사항

7.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8.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6. (생 략)

제14조(회의 등) ① (생 략)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제16조(의견청취 등) (생 략)

<신 설>

제출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4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장 또는 위원장-----

-.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그 소속 공무원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16조(의견청취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장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감사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감사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신 설>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자로서, 현 시점에서 지급인원 산출 및 비용추계가 불가함

4. 작성자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정혜윤(☎2133-3187)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실외이동로봇 운행 기준을 준용하여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통행 허용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 규정 신설(안 제17조제10호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6. 1. 29. ~ 2. 1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서성규 (☎ 02-3780-081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

나. 실외이동로봇의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

다.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

라. 하천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 10. (생략) <u><신설></u>	제17조(금지행위)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 나. 실외이동로봇의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 다.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11. ~ 15. (생 략) ② (생 략)	<u>것</u> <u>라. 하천관리청이 정한 운행</u> <u>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u> <u>할 것</u> 11.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통행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 형식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서성규 (☎ 02-3780-081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여성플라자 내 피움서울 조성, 서울여담재 운영 종료 등 변화한 시설 현황을 반영한 조문 현행화
- 나. 시설의 주소 이전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 해소를 위해 주소·명칭 등을 다른 별표 삭제 및 시행규칙으로 명칭 규정
- 다. 여성관련시설 사용자가 시 일반입찰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 수의허가 조항을 삭제

2. 주요내용

- 가. 여성플라자 내 피움서울 구성에 따른 시설기능 확대(안 제5조)
- 나. 서울여담재 운영 종료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조, 안 제12조의2)
- 다. 여성능력개발원 등 시설의 위치 근거·주소 삭제
(안 제5~9조, 별표 1~5, 별표 5의2)
- 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자가 조항 삭제(안 제14조제3항)
- 마. 각 시설의 명칭을 ‘(서울)시설명’ 형식으로 통일
(안 제4~12조, 안 제17~19조, 별표 6, 별표 8)
- 바. 서울가족플라자 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 표 현행화(별표 6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6. 2. 5. ~ 2.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임

※ 작성자: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이광훈 (☎2133-501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여성플라자 :” 를 “서울여성플라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가족플라자 :” 를 “서울가족플라자:”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여성능력개발원 :” 을 “서울여성능력개발원:” 으로,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를 “서울여성발전센터와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성발전센터 :” 를 “서울여성발전센터:”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 를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7호) 중 “제6호” 를 “제5호”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등”) 을 “(서울여성플라자의 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플라자” 를 “제4조제1호에 따른 서울여성플라자” 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결혼비용 부담 완화 및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제7조의 제목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을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제2호 중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를 “서울여성발전센터와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를 “서울여성발전센터 및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을 “(서울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발전센터” 를 “서울여성발전센터” 로 한다.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서울여성발전센터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등”) 을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를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로 한다.

① 제4조제5호에 따른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를 각각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로 하고, 같은 항 중 “영 제28조” 를 “영 제28조의2”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를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를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로, “평생교육시설과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을 “평생교육시설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를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의 “제3장 사용허가”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시설이용

제17조 앞의 “제4장 시설이용”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3조)제1호 중 “여성”을 “자”로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사용허가

제13조(중전의 제14조) 제1항 전단 중 “사용하려는자”를 “사용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중전의 제16조)제2항 중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여성발전센터”를 “서울여성발전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여성플라자: 별표 6의 범위 안”을 “서울여성플라자: 별표 6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가족플라자: 별표 6의2”를 “서울가족플라자: 별표 6의2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여성발전센터: 별표 8의 범위 안”을 “서울여성발전센터: 별표 8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플라자”를 “서울여성플라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외한다) :”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발전센터”를 “서울여성발전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뺄을”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7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5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여성플라자의 시설 이용료 부과기준 (제18조제1항제1호 관련)”을 “서울여성플라자 이용료 부과기준 (제18조제1항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제목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기준 (제18조 제1항 제3호 관련)”을 “서울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기준 (제18조제1항제3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9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의2]

서울가족플라자 이용료 부과 기준(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이용료 부과 · 징수 기준(단위)
기본시설 이용료	다목적홀	52,800원~160,000원(1시간)
	교육장	25,000원~65,000원(1시간)

※ 그 밖의 부대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는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구 가능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 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 ----- ----- -----.
1. <u>여성플라자</u> :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등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 설	1. <u>서울여성플라자</u> : ----- ----- ----- ----- --
2. <u>서울가족플라자</u> :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u>서울가족플라자</u> : ----- ----- -----
3. <u>여성능력개발원</u> : 여성의 능 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u>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u> 에 대한 평 가·조정·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u>서울여성능력개발원</u> : ----- ----- ----- <u>서울여성발전센 터와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u> - ----- -----
4. <u>여성발전센터</u> :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 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	4. <u>서울여성발전센터</u> : ----- ----- ----- -----

5. <u>여성인력개발센터</u>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창 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고 용유지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u>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u> : ---- ----- ----- ----- -----
6. <u>서울여담재</u> : 여성사 자료 발 굴·보존·연구 및 공유, 교육 ·문화·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삭 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 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 제5호- ----- ----- ----- -----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 플라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서울여성플라자의 기능) <삭 제>
② <u>여성플라자</u> 의 주요기능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서울여성플 라자---.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u>결혼비용 부담 완화 및 감소 한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지 원</u>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생략)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생략)

제8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②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제9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등) ① 제4조제5호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7조(서울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 <삭제>

제4조제3호에 따른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서울여성발전센터와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3. (현행과 같음)
4. 서울여성발전센터 및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
5. (현행과 같음)

제8조(서울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서울여성발전센터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서울여성발전센터-----.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5호에 따른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제10조(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 ① 국가 또는 시가 아닌 법인·단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취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제48조 및 영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 ① -----
-----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

② -----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

③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 영 제28조의2-----.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
-----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계법령의 적용) ① 여성
인력개발센터는 「평생교육
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본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정
보의 제공, 상담, 알선 등을 수
행함에 있어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
다.

제12조의2(서울여담재 명칭 및 기
능 등) ① 제4조제6호에 따른
서울여담재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의2와 같다.

② 서울여담재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사 자료 발굴·보존·연
구 및 공유
2. 여성사 자료관 운영
3. 교육·문화·전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

<신 설>

제12조(관계법령의 적용) ① 서울
여성인력개발센터-----
----- 평생교육시설
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
-----.

②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

<삭 제>

제4장 시설이용

제13조(이용자격)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2. 3. (생략)

제3장 사용허가

<신설>

제14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이 설치한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 또는 여성관련시설 내 공간을 사용하려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정하는 경우 제13조의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5조 (생략)

제16조(이용자격) -----

-----.

1. ----- 자 -----

--

2.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장 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 등) ① -----

----- 사용하

려는자-----

-----.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1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원상회복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시설이용

제17조(교육이용) ① 여성발전센

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직업교육·생활문화교육·특별교육·창업보육 및 아동교실교육과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되, 시장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회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발생한 -----

--.

<삭 제>

제17조(교육이용) ① 서울여성발

전센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

1. 여성플라자 : 별표 6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2. 서울가족플라자 : 별표 6의2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3. 여성발전센터 :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4. 여성인력개발센터 :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 이용의 직접적인 소요경비
5. 서울여담재 : 별표 9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② (생 략)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이용하는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1. 서울여성플라자: 별표 6의 범위-----

2. 서울가족플라자: 별표 6의2의 -----
--

3. 서울여성발전센터: 별표 8의 범위-----
--

4. 서울여성인력개발센터: ----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

----- 서울여성플라자-----
-----.

1. -----

----- 제외한다: -----

-----.

2.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이용료 각각 면제.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100분의 50을 줄임.

2.·3. (생략)

제20조(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

----- 경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울여성발전센터 -----
-----.

1. -----

경우: -----

-----.

2.·3. (현행과 같음)

제20조(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 할 -----.

1. (생략)
 2. 이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생략)
-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여성플라자의 시설 이용료 부과기준(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6의2 서울가족플라자 이용료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구분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단위)
기본시설 이용료	다목적홀	52,800원~160,000원(1시간)
	교육장	25,000원~65,000원(1시간)
	공유좌석	10,000원~50,000원(1개월)
	공유부엌	7,500원~30,000원(1시간)

별표 8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기준(제18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 9

1. (현행과 같음)
 2. ----- 관련 법령-----

--
 3. (현행과 같음)
-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 제6호까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6 서울여성플라자 이용료 부과기준(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6의2 서울가족플라자 이용료 부과기준(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단위)
기본시설 이용료	다목적홀	52,800원~160,000원(1시간)
	교육장	25,000원~65,000원(1시간)

별표 8 서울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기준(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삭 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항에 해당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여성플라자 내 피운서울 조성에 따른 결혼 지원 시설기능 확대(제5조)
 - 서울여담재 운영 종료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제4조, 제12조의2, 별표9)
 - 여성능력개발원 등 시설의 위치 근거·주소 삭제(제5~9조, 별표1~5의2)
 - 여성관련시설 사용허가 시 수의허가 조항 삭제(제14조 제3항)
 - 각 시설의 명칭을 ‘(서울)시설명’ 형식으로 통일(제4~12조, 제17~19조, 별표6, 별표8)
- 다만, 여성플라자 내 결혼 관련 지원사업은 기존 제6호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조항으로도 지원해 왔으나,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선언적으로 추가 규정함

4. 작성자

-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이광훈 주무관(2133-5010)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신고 등)의 일부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회계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6.2.5~ 2.25.)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불입

※ 작성자: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희순 (☎ 02-2133-471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한다.

제6조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9조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 <u>시행규칙</u> ”이라 한다)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식품위생법 시행규칙</u> 」 ----- ----- ----- -----
제2조(영업장소) ① <u>시행규칙</u>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u>휴게음식점영업</u> 또는 <u>제과점영업</u> (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 <u>시설·장소</u> ”라 한다)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 <u>식품위생법 시행규칙</u> 」(이하 “ <u>시행규칙</u> ”이라 한다) ----- <u>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u>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u>관련법령</u> 에 따른 위생, 안전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 -- <u>관련 법령</u> -----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
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희순(02-2133-471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 및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정의 구분 및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안 제5조~제7조)

나. 기금의 관리·운용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함(안 제8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6. 2. 26. ~ 3. 1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박미라 (☎2133-695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2. 강북등발전계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①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 ②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강북등발전계정) ①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 ② 강북등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로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강북등발전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강북등발전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8조(중전의 제7조) 제1항제2호 중 “도시공간전략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간전략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2. 강북등발전계정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6조(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①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신 설>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
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
정으로의 전출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사업
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관
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
경비

제7조(강북등발전계정) ① 강북등
발전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
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3.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운용 수
익금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
입금

② 강북등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
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
업 중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
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분임기금운용관 : 도시공간전략과장
3. (생략)

② (생략)

제8조 (생략)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로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강북등발전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강북등발전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도시계획과장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공간전략과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0조 ~ 제13조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도시계획과장-----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 제14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계정의 구분과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박미라(02-2133-6956)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창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8.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창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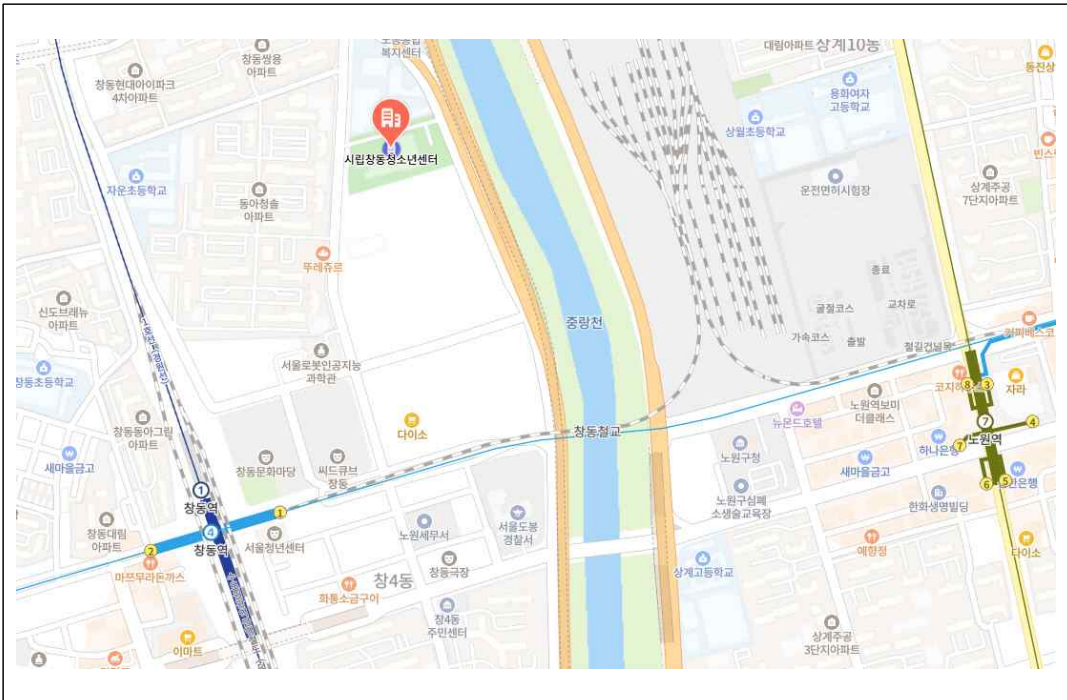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 개관일자 : 2005. 10. 29.
- 시설규모 : 대지 61,563㎡ / 연면적 5,016㎡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디지털창작공간, 공연연습실, 다목적활동장, 루프탑, 피아노실 등 평생교육 강의실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6. 9. 1. ~ 2029. 8.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291백만원('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895백만원, 운영비 201백만원, 사업비 946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249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성과보고서 1부.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현주 (☎02-2133-4124)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0건으로 취득 7건, 처분 3건임

○ 취득 7건은 신축 등 2건, 신축 및 증축 1건, 교환완료 및 신축 1건, 매입 1건, 매입 취소 1건, 현물출자(권리취득) 1건

○ 처분 3건은 매각 1건, 현물출자 1건, 멸실 1건

나. 취득 7건

○ 신축 등 2건에 대한 세부내역

-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중심의 생태 동물원 기능을 수행하여 서울 대표 명소가자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어린이대공원을 동물원 허가기준을 충족한 어린이특화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건물(4,652.00㎡)과 공작물(11,375.00㎡) 신축

○ 신축 및 증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당초 도봉소방학교 이전 부지에 공공주택과 시민안전체험관 및 지역필요시설(복합체육관, 가족센터, 키즈카페) 등을 신축(건물 3동, 총31,520.00㎡)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복합체육관 면적을 확대하며 소방시설을 변경(통합정비센터 제외)하고자 신축(건물 2동, 총54,163.00㎡) 및 기존 소방서를 증축(810,00㎡)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상기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용도변경 등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비가 62.9% 증가되어 (146,571백만원→238,798백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 교환완료 및 신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당초 시유지(양천구 신정동 1290, 605.30㎡)와 사유지(마포구 연남동 245-82, 282.30㎡)를 교환하고, 취득 부지에 공공주택 및 도서관을 신축(547.7㎡)하고자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토지 교환 완료 후, 도서관 사용계획 취소에 따라 용도를 변경(공공주택 및 도서관 → 공공주택)하고, 물가상승 및 임대주택 혁신방안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55.5% 증가(1,648

백만원→2,562백만원)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 매입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우수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생태적 가치가 높은 백사실계곡 사유지(8,310.00㎡)를 매입

○ 매입 취소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당초 마곡도시개발구역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립을 위하여 부지(24,140.00㎡)를 매입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 되었으나, 사업주체 변경(시→서울에너지공사)에 따라 매입 취소

○ 현물출자(권리취득)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면목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시유지(중랑구 면목동 378-9 외 1, 992.80㎡)와 구유지(중랑구 면목동 378-4 외1, 992.80㎡)를 교환하여, 시유지(중랑구 면목동 378-9 외 7, 10,790.20㎡)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획지통합 개발로 교환이 불필요하게 되어 상기 시유지와 구유지 간의 교환을 취소하고, 시유지(중랑구 면목동 378-9 외 8, 10,946.00㎡)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함에 따른 권리(금액 42,479백만원)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다. 처분 3건

○ 매각 1건에 대한 세부내역

1970년 시유지 상에 건립된 이촌시범아파트의 노후화로 아파트 건물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시행하고자 해당 시유지(용산구 이촌동 206-27 일대, 총 6,383.00㎡)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매각

○ 현물출자 1건, 멸실 1건에 대한 세부내역

면목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시유지(중랑구 면목동 378-9 외 8, 10,946.00㎡)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고 건립부지 내 건물(중랑구 면목로 238, 12,453.21㎡)을 멸실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7건

- 신축 등	2건	:	건물 4,652.00㎡ 공작물 11,375.00㎡
- 신축 및 증축	1건	:	건물 54,973.00㎡
- 교환완료 및 신축	1건	:	토지 282.30㎡ 건물 469.62㎡
- 매입	1건	:	토지 8,310.00㎡
- 매입취소	1건	:	토지 24,140.00㎡
- 현물출자(권리취득)	1건	:	금액 42,479백만원

○ 처분 3건

- 매각	1건	: 토지 6,383.00㎡
- 현물출자	1건	: 토지 10,946.00㎡
- 멸실	1건	: 건물 12,453.2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중심의 생태 동물원 기능을 수행하여 서울 대표 명소가
자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어린이대공원을 동물원 허가기준을 충족한 어린이특화공
원으로 재조성하고자 건물(4,652.00㎡)과 공작물(11,375.00㎡) 신축하고,

당초 도봉소방학교 이전 부지에 공공주택과 시민안전체험관 및 지역필요시설(복합체육관,
가족센터,키즈카페) 등을 신축(건물 3동, 총31,520.00㎡)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복합체육관 면적을 확대하며 소방시설을 변경(통합정비센터 제
외)하고자 신축(건물 2동, 총54,163.00㎡) 및 기존 소방서를 증축(810,00㎡)하는 것으로 계획
을 변경하여,

상기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용도변경 등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비가 62.9% 증가되어
(146,571백만원→238,798백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당초 시유지(양천구 신정동 1290, 605.30㎡)와 사유지(마포구 연남동 245-82, 282.30
㎡)를 교환하고, 취득 부지에 공공주택 및 도서관을 신축(547.7㎡)하고자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토지 교환 완료 후, 도서관 사용계획 취소에 따라 용도를 변경(공공주택 및 도서관 → 공
공주택)하고, 물가상승 및 임대주택 혁신방안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55.5% 증가(1,648백만원→
2,562백만원)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우수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생
태적 가치가 높은 백사실계곡 사유지(8,310.00㎡)를 매입하고,

당초 마곡도시개발구역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립을 위하여 부지(24,140.00㎡)를 매입하
는 것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 되었으나,

사업주체 변경(시→서울에너지공사)에 따라 매입 취소하고,

면목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시유지(중랑구 면목동 378-9 외 1, 992.80㎡)와 구
유지(중랑구 면목동 378-4 외1, 992.80㎡)를 교환하여, 시유지(중랑구 면목동 378-9 외 7,
10,790.20㎡)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
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획지통합 개발로 교환이 불필요하게 되어 상기 시유지와 구유지 간의
교환을 취소하고, 시유지(중랑구 면목동 378-9 외 8, 10,946.00㎡)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함에 따른 권리(금액 42,479백만원)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1970년 시유지 상에 건립된 이촌시범아파트의 노후화로 아파트 건물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시행하고자 해당 시유지(용산구 이촌동 206-27 일대, 총 6,383.00㎡)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매각하고,

면목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시유지(중랑구 면목동 378-9 외 8, 10,946.00㎡)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고 건립부지 내 건물(중랑구 면목로 238, 12,453.21㎡)을 멸실하여,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7건

- | | | | |
|--------------|----|---|--------------------------------|
| － 신축 등 | 2건 | ： | 건물 4,652.00㎡
공작물 11,375.00㎡ |
| － 신축 및 증축 | 1건 | ： | 건물 54,973.00㎡ |
| － 교환완료 및 신축 | 1건 | ： | 토지 282.30㎡
건물 469.62㎡ |
| － 매입 | 1건 | ： | 토지 8,310.00㎡ |
| － 매입취소 | 1건 | ： | 토지 24,140.00㎡ |
| － 현물출자(권리취득) | 1건 | ： | 금액 42,479백만원 |

○ 처분 3건

- | | | | |
|--------|----|---|---------------|
| － 매각 | 1건 | ： | 토지 6,383.00㎡ |
| － 현물출자 | 1건 | ： | 토지 10,946.00㎡ |
| － 멸실 | 1건 | ： | 건물 12,453.21㎡ |

※ 작성자 : 재무국 재산관리과 이희준 (☎2133-3275)

첨 부

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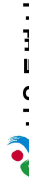
구	분	이 전			금 회			합 계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취득	토지	3	16,931.10	60,398,344	2	32,732.30	6,454,864	5	49,663.40	66,853,208
	건물 등	8	68,013.02	333,483,491	4	71,469.62	259,480,552	12	139,482.64	592,964,043
	기타	1	-	2,700,000	1	-	42,478,664	2	-	45,178,664
	선박	1	-	2,700,000	-	-	-	1	-	2,700,000
	토지	1	1,500.00	8,920,500	-	-	-	1	1,500.00	8,920,500
	건물 등	-	2,477.53	15,373,935	-	-	-	-	2,477.53	15,373,935
	토지	1	14,383.70	46,294,872	-	-	-	1	14,383.70	46,294,872
	건물	1	44,104.76	210,336,780	-	-	-	1	44,104.76	210,336,780
	토지	-	515.00	2,918,787	-	-	-	-	515.00	2,918,787
	건물	1	11,586.64	40,630,822	-	-	-	1	11,586.64	40,630,822
	토지	1	532.40	2,264,185	-	-	-	1	532.40	2,264,185
	건물	1	128.93	1,542,000	-	-	-	1	128.93	1,542,000
	건물 등	5	9,715.16	65,599,954	2	16,027.00	18,120,888	7	25,742.16	83,720,842
	건물	-	-	-	1	54,973.00	238,797,526	1	54,973.00	238,797,526
	토지	-	-	-	-	282.30	1,749,413	-	282.30	1,749,413
	건물	-	-	-	1	469.62	2,562,138	1	469.62	2,562,138
	토지	-	-	-	1	8,310.00	360,251	1	8,310.00	360,251
	토지	-	-	-	1	24,140.00	4,345,200	1	24,140.00	4,345,200
	권리	-	-	-	1	-	42,478,664	1	-	42,478,664
	토지	3	16,361.20	42,088,508	2	17,329.00	118,393,403	5	33,690.20	160,481,911
처분	건물	1	206.27	1,532,849	1	12,453.21	6,619,793	2	12,659.48	8,152,642
	토지	3	16,361.20	42,088,508	-	-	-	3	16,361.20	42,088,508
	건물	1	206.27	1,532,849	-	-	-	1	206.27	1,532,849
	토지	-	-	-	1	6,383.00	75,914,739	1	6,383.00	75,914,739
	토지	-	-	-	1	10,946.00	42,478,664	1	10,946.00	42,478,664
	건물	-	-	-	1	12,453.21	6,619,793	1	12,453.21	6,619,793
	토지	-	-	-	-	-	-	-	-	-
	토지	-	-	-	-	-	-	-	-	-
	토지	-	-	-	-	-	-	-	-	-
	토지	-	-	-	-	-	-	-	-	-

2.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26도 제1차 추시분)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구	동	번지					
계									
1	건물 신축	광진구	능동	18	104,201.92	308,414,080	2029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재조성사업	정원도시정책과
2	공작물 신축				4,652.00 11,375.00	10,620,266 7,500,622			
3	건물 신축 (변경)	도봉구	방학동	708	54,163.00	235,067,655	2031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개발사업	공공정책과
	건물 증축 (변경)				810.00	3,729,871			
4	토지 교환 완료	마포구	연남동	245-82	282.30	1,749,413	2022	연남동 공공주택 건립	공공주택과
	건물 신축 (변경)				469.62	2,562,138	2026		
5	토지 매입	중로구	부암동	신7번지 외 1	8,310.00	360,251	2027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사업	자연생태과
6	토지 매입 (취소)	강서구	마곡동	72	24,140.00	4,345,200	-	마곡 집단에너지 건설부지 매입 사업[취소]	녹색에너지과
7	현물출자 (권리취득) (변경)	중랑구	면목동	378-10 일 대	-	42,478,664	2030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 조성	공공주택과

3.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26년도 제1차 수시분)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처분 시기	처분사유	소관부서
		구	동	번지					
		계			29,782.21	125,013,196			
1	토지 매각	용산구	이촌동	206-27 일대	6,383.00	75,914,739	2028	이촌시범아파트 부지 매각	공공주택과
2	현물출자 (변경)	중랑구	면목동	378-4 외 9필지	10,946.00	42,478,664	2030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 조성	공공주택과
3	건물 매각 (변경)	중랑구	면목동	378-5외	12,453.21	6,619,793	2022/27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요약('26년도 제1차 수시분)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종류	건수	(연)면적 (㎡)	기준가격 (천원)
서울여린미래공원 등물원 재조성사업	취 득 (신축)	건물	1	4,652.00	10,620,266
	취 득 (신축)	공작물	1	11,375.00	7,500,622
(변경)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개발사업	취 득 (신축)			54,163.00	235,067,655
	취 득 (증축)	건물	1	810.00	3,729,871

- 목적 및 용도 : 등물복지 향상 및 등물원 허가기준 충족을 위한 숲속 등물원 재조성 / 문화 및 집회시설(등물원)

- 대 상 지 : 광진구 등동 18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5. 03월 ~ '29. 04월

- 소요예산 : 28,500,000천원

- 사업규모 : 16,027㎡ (건물 4,652㎡, 공작물 11,375㎡)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및 공작물 18,120,888천원

- 계약방법 : <건물신축> 일반입찰

- 목적 및 용도 :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대주택(장기전세주택)과 시민안전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시민안전체험관 및 지역필요시설(복합체육관, 기족센터, 키즈카페) 등을 조성

- 대 상 지 : 도봉구 방학동 708번지

- 사업기간 : '17. 7월 ~ '31. 9월

- 소요예산 : 238,797,526천원

- 사업규모 : <건물신축> 54,163.00㎡

<건물증축> 810.00㎡

- 기준가격 명세 : <건물신축> 235,067,655천원 [신축비]

<건물증축> 3,729,871천원 [증축비]

<건물명실> 819,119천원 [시기표준액]

- 계약방법 : <신축, 증축> 공개경쟁입찰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종류	건수	(연)면적 (㎡)	기준가격 (천원)	
(변경) 연남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취 득 (신축)	건물	1	469.62	2,562,138	- 목적 및 용도 :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사유지 교환 및 공공주택 공급 - 대 상 지 : 미포구 연남동 245-82번지 - 사업기간 : '21.6월 ~ '26.11월 - 소요예산 : 3,116,830천원 - 사업규모 : 토지 282.30㎡, 건물 469.62㎡(연면적)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1,813,777천원, 건물 2,562,138천원 - 계약방법 : <토지교환> 교환 <건물신축> 제한경매입찰
	취 득 (교환완료)	토지	-	282.30	1,813,777	
	처 분 (교환완료)	토지	-	605.30	1,962,987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사업	취 득 (매입)	토지	1	8,310.00	360,251	- 목적 및 용도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보전지역을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한 - 대 상 지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산7번지, 산7-1번지 - 사업기간 : '25. 06월 ~ '27. 12월 - 소요예산 : 1,005,000천원 - 사업규모 : 토지 8,310.00㎡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360,251천원 - 계약방법 : <토지매입> 협의매입
(취소) 마곡 집던에너지 건설부지 매입	취 소 (매입)	토지	1	24,140.00	4,345,200	- 목적 및 용도 :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 - 대 상 지 : 강서구 마곡동 72 - 사업기간 : '13. 1월 ~ '20. 12월 - 소요예산 : 79,300,000천원 - 사업규모 : 토지 24,140.00㎡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4,345,200천원 - 계약방법 : <토지매입> 협의매입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종류	건수	(연)면적 (㎡)	
(변경) 면적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 조성	취 득 (관리취득)	증권	1	-	42,478,664
	처 분 (현물출자)	토지	1	10,946.00	42,478,664
	처 분 (매실)	건물	1	12,453.21	6,619,793
	이촌시범아파트 부지 매각	처 분 (매각)	토지	1	6,383.00

- 목적 및 용도 : 서민 주거 안정화,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현물출자·건물매실
- 대 상 지 : 종량구 면목동 378-10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2.4월~'30.12월(매실, 교환 및 현물출자)
- 소요예산 : 별도없음(※감정평가비 별도)
- 사업규모 : (현물출자) 토지 10,946.0㎡ (건물매실) 건물 12,453.21㎡
- 기준가격 명세 : (현물출자) 토지 42,478,664천원 (건물매실) 6,619,793천원
- 계약방법 : (현물출자) 감정평가후 출자 (건물매실) 공개경쟁입찰(SH시행)

- 목적 및 용도 : 이촌시범아파트의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하고자 해당 부지 매각
- 대 상 지 : 용산구 이촌동 206-27 일대
- 사업기간 : '26.2월~'27.12월
- 소요예산 : 별도없음(※감정평가비 별도)
- 사업규모 : 토지 6,383.00㎡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75,914,739천원
- 계약방법 : (토지매각) 수의계약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개포디지털혁신파크(무중력지대 강남)” 시설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공동연구실(JQL) 운영을 위해 공간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14호, 제17조제5항제4호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3 / 무중력지대 강남(1~2층)
- 사 용 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 허가면적 : (토지) 703.3㎡, (건물) 300.9㎡
- 허가기간 : ' 26.5.~ ' 29.12.(3년 8개월)
- 감면예상액 : 총 802,993천원

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서울시는 市 전략사업(AI·바이오·금융 등)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초기 단계인 양자기술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기술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은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국가 양자기술 연구거점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는 국가 전략 연구사업임
- 이에 서울 내 양자분야 산·학·연 협력 기반의 공동연구 공간을 조성하여 초기 단계인 양자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서울 양자산업 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연구거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제17조제5항제4호
-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6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6.3.12.)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시의회 동의 후 추진)

※ 작성자 : 경제실 첨단산업과 강평선(☎2133-8750)

참고자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한강버스 운항개시(' 25.9.18) 이후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교통연계서비스 운영 등 서울시 요청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근거 마련 필요
- 나. 기존 협약(' 25.3.7) 내용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자와 협의 통해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업무협약)에 따라 변경 협약(안)을 마련하였음
- 다. 본 업무협약(안)에는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의회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변경 개요

- 협 약 명 :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 협약
- 당 사 자 :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 ㈜한강버스 대표
- 변경목적 : 시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요청한 비용 지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나. 추진경위

- '23.12.28 : 한강 리버버스 운영 사업 실시 협약협약 체결 (서울시-㈜이크루즈)
- '23.12.29 :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24. 6.26 : (주)한강버스 법인 설립 (SH 51%, ㈜이크루즈 49%)
- '25. 3. 7 :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한강버스)
- '26. 3.12 : 협약 변경(안) 검토 및 의견 조율 (서울시-㈜한강버스)

다. 주요 변경내용

- 사업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지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제6, 13조)
 -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사업자와 협의하여 교통연계 서비스 운영 및 지원 가능토록 반영
 - 운항결손액과 더불어 교통연계 서비스 제공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반영
- 운항결손액 산정 시 인건비 적용 기준 현실화 (별지 1, 2)
 - 운항지출금 및 부대사업지출금 산정 시 인건비 적용기준을 '최소 필요인력' 에서 '서울시와 협의한 필수 근무현원' 으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선박직원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나. 예산조치 : 2027년 예산반영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미래한강본부 수상교통사업과 윤지용 주무관 (☎ 3780-0663)

붙임 1. 변경 협약안 1부(별첨)

2. 비용추계서 1부(별첨)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영구시설물축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양천구 신월3동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긴급차량 접근 불가 및 주민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주차난이 심각함
- 나. 인근에 서울시의 공공시설인 서서울호수공원과 신월야구장이 있으나 해당 시설 이용객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과 이용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음
- 다. 신월3동에 있는 사유지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부지를 일부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할 경우,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사유지 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성대상 토지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67
- 면 적 : 6,980㎡ (지목: 대)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나. ‘신월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 24.04.(타당성 조사) ~ ’ 26.10.(준공예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67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외곽 부지)
- 조성규모 : 조성대상 토지 6,980㎡ 중 1,182㎡
(지상 평면식 주차장, 주차 45면 설치)
- 총사업비 : 1,201백만원 (전액 구비)

다. 그간의 추진사항

- ’ 24.04.~08.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양천구 주차관리과)
- ’ 25.12.23. : 신월3동(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계획 수립 (양천구 주차관리과)
- ’ 26.02.09.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용허가 추진계획 수립 (서울시 문화예술과)
- ’ 26.02.23. :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서울시장-양천구청장

합의 완료(협약서 체결)

○ ' 26.03.12. : 2026년 제2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 안 건 명: (영구시설물 축조) 양천구 신월3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 심의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 및 지방의회 동의 시 예외 허용

나. 예산조치

○ 영구시설물 축조(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비용 1,201백만원
전액 구비로 부담

다. 합 의

○ 영구시설물 소유권 : 주차장 준공 후 양천구 소유 및 관리

○ 토 지 소유권 : 서울시 소유 유지

○ 시유지(토지)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양천구에 토지 사용료 산정·부과

라. 원상회복계획

○ 대 상 : 본건 시유지 1,182㎡

○ 비 용 : 약 209,700천원(옹벽 철거, 아스콘 포장 철거,
전기·통신 철거, 녹지 복원) 전액 구비로 부담

※ 해당 비용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예정

마. 기 타 : 현장사진, 위치도, 설계도, 평면도 등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이영광 (☎ 2133-2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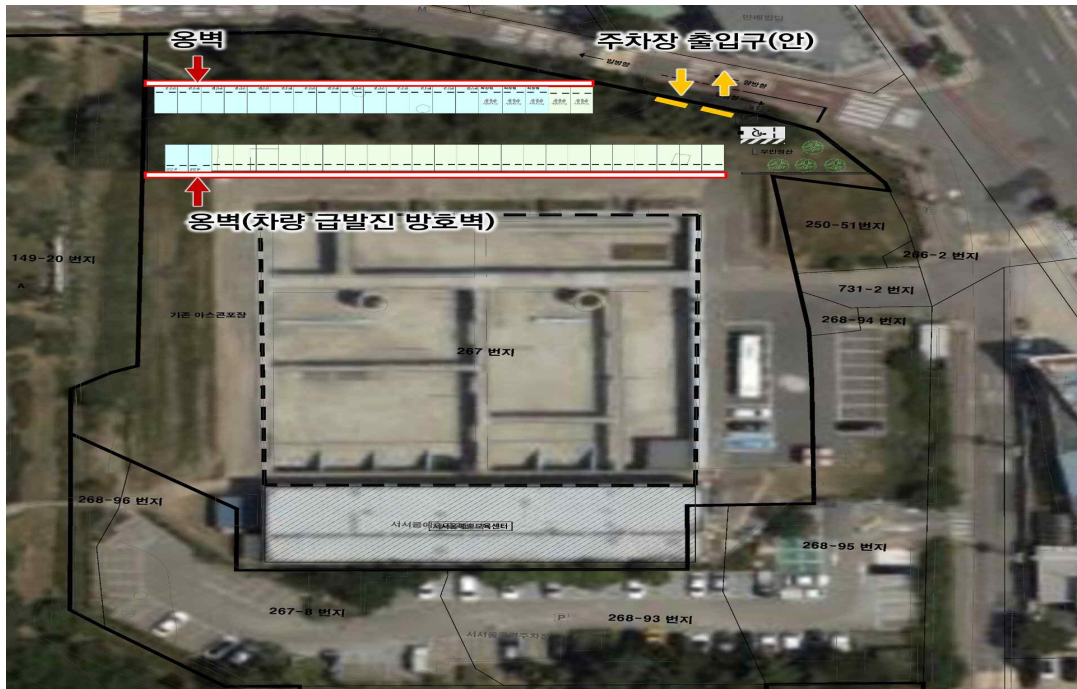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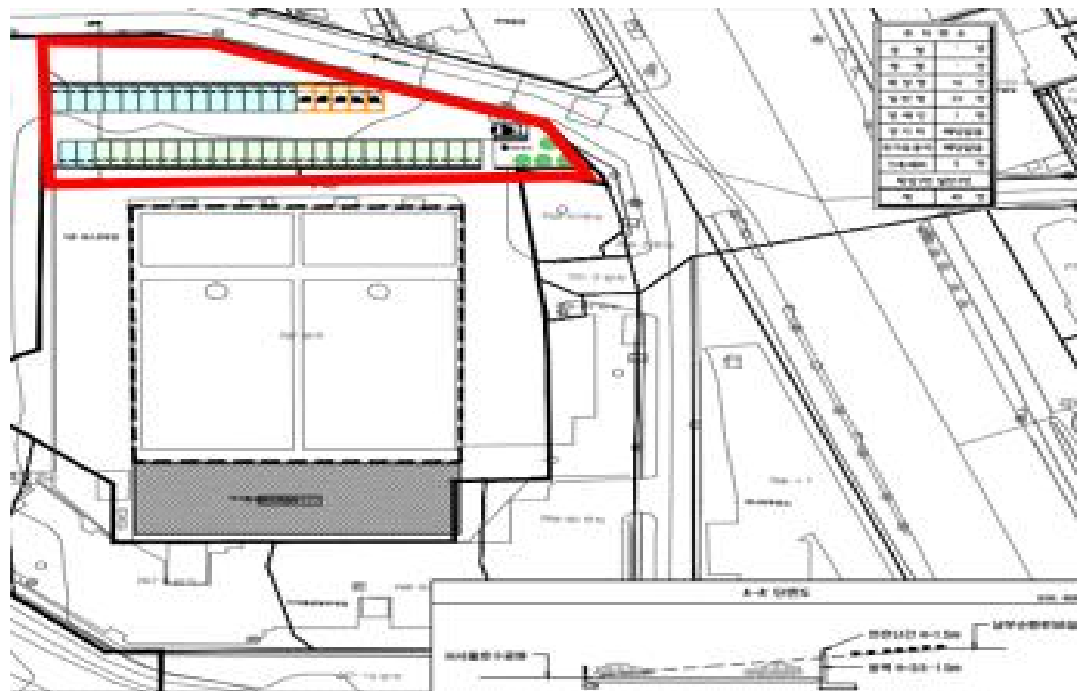
위치도



설계도



평면도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이영광 (☎ 02-2133-2586)

- 붙임 1. 영구시설물(공영주차장) 축조 합의서 1부.
2. 영구시설물 축조 및 원상회복 계획서 1부.

[붙임 1.]

「신월3동(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영구시설물(공영주차장) 축조」를 위한

합 의 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는 서울시 소유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부지에 양천구에서 공영주차장(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간에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는 서울시 소유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부지에 양천구가 축조하는 영구시설물 및 대상 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대상 토지 및 영구시설물은 아래와 같다.

① 토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67 중 일부(지목 : 대지)

② 영구시설물

- 규 모 : (시공면적) 1,182.0㎡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45면(평면식), 관제시설, CCTV등)
- 용 도 : 공영주차장
- 건립목적 : 신월3동 일대 주택가 불법주차 해소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도시안전 수준을 향상

제3조(시설의 건설)

- ① 공영주차장(영구시설물) 건설공사는 “양천구”의 비용으로 시행하며 “양천구”는 영구시설물 착공 전에 철거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② “양천구”는 영구시설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양천구”는 공사 착공 및 준공 등 공사 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은 “서울시”에 통지한다.

제4조(소유권)

- ① 제2조 제2항의 영구시설물은 “양천구”의 소유로 귀속된다
- ② “양천구”는 제2조 제2항의 영구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제2조 제1항의 토지에 “지상권” 등 어떠한 사권도 설정할 수 없다.

제5조(토지사용허가 및 사용료)

- ① “서울시”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에 대하여 “양천구”에 유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한다. 허가조건, 사용료 등 유상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은 공영주차장 존치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천구”는 공공시설 확충으로 인해 “서울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조건없이 철거한다.

제6조(영구시설물 관리·운영)

“양천구”는 영구시설물 건설공사 완료 후 제2조 제2항의 건립목적에 맞게 주차장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제7조(중도해제·해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는 본 합의를 중도 해제·해지(이하 “해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2. 시설물의 노후화나 기능저하 등으로 철거가 결정된 경우
 3. 공공계획에 의해 다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철거가 결정된 경우
- ② 본 협약은 “서울시”와 “양천구”의 합의로 해제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원상복구 등)

- ① 제7조에 따라 협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제 등을 하는 경우 축조된 영구시설물은 “양천구”의 비용으로 축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양천구”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시”가 원상복구 후, 그 비용을 “양천구”에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합의의 해석)

본 합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합의서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합의의 효력 등)

- ① 본 합의는 제2조 제2항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및 제2조 제1항의 토지에 대한 유상 사용·수익허가 통보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무효로 한다.

- ② 본 합의를 증명하고 본 합의에 따른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장”과 “양천구청장”이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2. 23.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양천구청장 이 기 재



[붙임 2.]

영구시설물 축조 및 원상회복 계획(양천구)

☐ 사업 개요

- 사업명 : 양천구 신월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67(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 사업기간 : ' 24.04. ~ ' 26.10.
- 사용기간 :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허가기간
- 규모 : 지상 평면식 총 45면 / (활용면적) 1,182.0㎡
- 총사업비 : 총 1,201백만원(구비)

☐ 사업 필요성

- 신월3동은 양천구 대표적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지(국·시유지) 활용 필요성 증가
- 신월야구장(市), 서서울호수공원(市) 이용객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해 그에 따른 필요 주차면 증가 및 주차장 이용 접근성 개선 필요
 - (신월야구장)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 및 사회인야구대회 등 각종 대규모 야구대회가 개최되어, 이용자 대비 주차면 부족 심각(現 총12면)
 - (서서울호수공원) 서남권 최대 규모 공원으로, 여러 시설과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방문객 꾸준히 증가(現 공원 부설주차장 부재)

☐ 기대효과

- 주차확보율이 낮은 양천구 신월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및 보행자 안전 확보
- 노상 불법주차 감소로 화재, 응급차량 등 비상 시 방재취약지역 통행로 확보에 따른 도시 안전 증대

☐ 시설물 설치 내역

시 설 명	연면적(m ²)	사용 용도	비 고
신월3동 노외 공영주차장	1,182.0㎡	공영주차장	

○ 설치 내역(안)



□ 원상회복 계획

- 원상회복 대상 : 시유재산 1,182.0㎡(양천구 신월동 267)
- 원상회복 시점 : 사용허가 종료 시까지
- 원상회복 비용 : 약 209,700천원

구 분	세부 내용	비 용	비 고
주차장 원상회복 소요비용	소규모 옹벽 등 철거비 (되메우기 비용 포함)	118,300천원	
	아스콘포장 철거비	25,700천원	
	전기통신 등 철거비	37,700천원	
	녹지 복원	28,000천원	
총 계		209,700천원	

※ 추후 실시설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원상회복 내용 : 주차장 포장 및 시설물 등을 제거하고 수목 및 잔디 식재를 통해 기존과 유사한 환경으로 원상 복구

○ 방 법 : 보증보험증권 발급

○ 예상보험료 내역(추후 작성)3

※ 사업 추진 시,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보험료 산정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위탁기간이 2026. 10. 31.자로 만료되므로,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다. 위탁 사무 내용

- 1)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2)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원개발 및 관리)
- 3)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4)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라. 위탁 시설 개요

- 1)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 5 외 2(건물 3동)
- 2) 시설규모 : 대지 533.15m² , 건물 1,823.85m² (3개동, 지상3층)
- 3) 주요시설 : 프로그램실, 상담실, 강당, 자원봉사자실 등
- 4) 위치도



지역여건

SH공사 임대단지 내에 위치해 지역 주민 접근 용이

마. 민간위탁 기간 : 5년(2026. 11. 1. ~ 2031. 10.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 소요예산 : 1,506 백만원('26년 기준)
- 2) 산출근거 : 인건비 1,165 백만원, 운영비 188 백만원,
사업비 151 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6년 제2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 추진계획(돌봄복지과-3824, 2026. 2. 11.)

붙임: 1. 성과보고서 1부.

2.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1부.

※ 작성자 : 복지실 돌봄복지과 정소율 (☎ 2133 - 738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잇다플레이스 건물 전체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서울잇다플레이스) 현황

-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723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제218동 제2층 제공공청사 1호(성동구 왕십리로 135)
- 규모: 지상 2층(건축연면적 2,422.75㎡, 전용면적 948.3695㎡)
- 재산관리관: 고득대응과장

나. (서울시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 개요

- 허가기간 : ' 26. 4. 13.~' 31. 4. 12. (5년)
- 무상사용기간 : ' 26. 5. 13.~' 31. 4. 12. (4년 11개월)
- 예상감면액 : 총 3,350백만원
- 사용목적 : 공공·공공용 사용(서울잇다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

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市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가능
 -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며,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잇다플레이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복지사업)으로서 비영리사업에 해당
 - 市 출연기관 비영리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할 경우 「공유재산법」 제24조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이 가능함
- 조세 절감, 행정 및 회계 비효율 방지(개선)를 위해 사용료 감면 필요
 - 재단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사용료만큼의 복지실 세출(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며, 사용료만큼 세입도 함께 증액되는 구조임
 - 조세 지출 절감*, 행정·회계 비효율 개선을 위해 재단 사용료 면제 추진 바람직

* 불필요한 세입·세출의 상계(相計)가 지속됨에 따라 국세(부가가치세) 지출 부담 증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나. 예산조치: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임차료) 예산변경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시의회 동의(4.30.)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5.7.) 후 사용료 면제
- 절차상 시의회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 순서는 무관하며, 동시 진행하여 매월 사용료(57백만원) 추가 예산편성을 방지하고자 함

※ 작성자 : 복지실 고독대응과 양윤영 (☎ 2133-716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비영리사업인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로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 재 지 : 용산구 한강로 2가 429외 1필지 호반써밋에이디션 611호, 612호, 613호
- 사 용 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사용허가 면적 : 토지 35.4215㎡, 건물 연면적 521.5901㎡
- 사용허가 기간 : 2026.5.11. ~ 2031.5.10.(5년)
- 예상 감면액 : 271,690천원(월 4,528천원) ※ 1차년도 : 54,338천원

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인 시민 주거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SH에서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은 SH의 비영리 사업으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4호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5항 제3호
 -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6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6.3.12.)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조건사항＞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할 것

※ 작성자 :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협력팀 남은주 (☎2133-798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비영리사업인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운영 하는 경우로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 재 지 : 용산구 한강로2가 426외 1필지 용산베르디움 프렌즈 커뮤니티시설 제2층 제 208호
- 사 용 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사용허가 면적 : 토지 43.0846㎡, 건물 연면적 611.23㎡
- 사용허가 기간 : 2026.6.1. ~ 2031.5.31.(5년)
- 예상 감면액 : 145,082천원(월2,418천원) ※ 1차년도 : 29,016천원

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 설립 목적인 시민 주거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자치구 25개 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 총괄 지원 및 주거복지 정책개발·연구·교육 등 서울시 공공 주거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중앙주거복지센터 사업은 SH의 비영리 사업으로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4호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5항 제3호
 -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6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6.3.12.)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조건사항＞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할 것

※ 작성자 :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협력팀 남은주 (☎2133-798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건물 일부를 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설립된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서린동, 영풍문고 옆)
- 면적: 대지면적 1,070㎡, 연면적 11,752㎡
- 목적: 국제기구 활동 지원
- 규모: 지하 4층, 지상 15층
- 재산관리관: 외국인이민담당관(건물), 주차계획과(토지)

나. (서울국제개발협력단) 공유재산 사용 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서울글로벌센터빌딩 13층 1호)
- 면적: 토지 24.36㎡, 건물 267.37㎡
- 목적: 국제개발협력단(SH 산하조직) 비영리 사업 수행(사무공간)
- 당사자: <허가부서> 외국인이민담당관 / <수허가자> 서울국제개발협력단
- 허가기간: 2025. 1월 ~ 2026. 12월(2년)
- 무상사용기간: 2026. 5월 ~ 2026. 12월(8개월)
- 예상 감면액: 총 62,037천원

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지방공사에 해당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정책공유 등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함.
- 또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추진을 지원하며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를 통해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

- ※ ' 26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 심 의 일: ' 26. 3. 12. (목)
 -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재산관리과-3468, ' 26. 3. 2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해야만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해야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3호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주민담당관 김희라 (☎ 2133-5066)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시티넷(CityNet) 의장 도시로서 2027년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적 리더십 강화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정책과 도시 간 협력 전략을 논의하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 서울총회’ 관련 시티넷 사무국과 상호 역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전 서울특별시의회의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안)

- 행 사 명 :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서울 총회
- 행사시기 : 2027년 9~10월 중 3일간
- 행사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참석규모 : 300명 내외
- 참가대상 : 155개 회원 도시·기관장, 국제기구 관계자(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등), 기타 경제·사회·행정 분야 초청 인사 등
- 주요행사 : 공식 회의(총회, 집행위원회, 국가지부·클러스터 회의), 부대행사(SDGs 도시 시상식, 지식 공유포럼), 정책 현장 견학 등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시티넷 사무국

나. 추진경과

- 제45차 집행위원회에서 2027년 총회 개최 후보지 의결 : ’ 25. 10.
- ‘2027년 총회 서울 개최 알림 및 협조 요청’ 서한문 수신(시티넷 사무국 → 서울시) : ’ 26. 1.

다. 협약 개요

- 협약서명 : 서울특별시와 시티넷 사무국 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양해각서
- 협약목적 : 서울총회 개최를 위한 서울시와 시티넷 사무국 간 상호 역할과 재정 협력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공식화함
- 당 사 자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 (공동 주관) 시티넷 사무국
- 당사자별 역할
 - 공동 협력 : 기획 및 운영체계 마련, 의제 설정 및 프로그램 구성, 국내외 홍보 및 참가 독려, 서울 선언문 작성, 초청장 발송 등
 - 서울시 : 행사장 대관·조성, 참가자 국내 체류 지원(숙박, 식사, 교통편 등), 정책 현장

견학 기획·운영, 행사 기획·운영 예산 확보 등

- 시티넷 사무국 : 공식 회의 및 부대행사 기획 총괄, 참가자 항공료 지원, 회원 도시 등 참가 홍보, 회의자료·프로그램 자료집 작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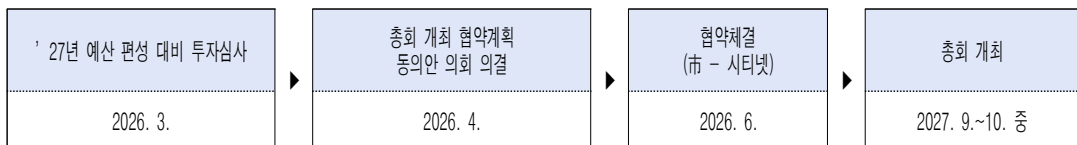
라. 기대효과

- 2025년 도시경쟁력 6위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의 글로벌 영향력강화 및 시티넷 회장 도시(2013년~)로서의 위상 재확립
 - 글로벌 중심 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현 모습을 회원 도시, 국제기구 등과 공유하고 서울 방문과 향후 도시 간 협력 계기로 활용
- 서울의 우수정책 해외 확산 및 시정가치 글로벌 전파
 - 대표 정책 현장 방문 프로그램으로 우수정책 공유 시너지 창출
 - 주요 도시와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교류·협력 파트너십 구축

마. 사업비

- 총 소요예산(안) : 1,450백만원
 - 서울시 : 1,400백만원(행사운영비 1,280, 국제부담금* 120)
 - * 저개발 도시별 대표자 항공료 지원 등을 위해 시티넷 사무국에 지원
 - 시티넷 자부담 : 50백만원(전담 인력, 총회·집행위 회의 진행 등)

바. 추진일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7년 예산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이다은 (☎2133-5270)

- 붙임 1. 업무협약서(국문)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11월 18일자로 위탁기관인 서울시·성남시와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나. 본 관리운영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를 설립(출자) 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출자 타당성 검토와 자치단체장 보고를 거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례선 트램 사업개요

- 주 관 : 서울시, 성남시
- 건 설 비 : 3,503억원 (LH공사 75%, SH공사 25% 분담)
- 사업규모
 - 총 연장 5.4km_ (본선)마천~북정(4.7km), (지선)남위례(0.7km)
 - ※ 서울시 60.7% (3.28km) / 성남시 39.3% (2.12km)
 - 정거장 12개소(송파 7, 성남 5), 차량 10편성(5칸), 기지 1개소

〈 위례선 트램 노선도 〉



나. 운영개요

- 운영기간 : 개통일로부터 5년 (' 26.12월 개통 예정)
- 운 영 비 : 연평균 240억원(추정) ※ 위탁기관 행정구역 거리비율 분담
- 영업시간 : 05:30 ~ 25:00(19시간 30분)

- 운행시격 : (본선) (첨두)5~10분, (비첨두)10~15분
(지선) (첨두)15분, (비첨두)20분
- 운임제도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 서울버스요금제와 동일
- 예상수요 : 일평균 최대 2.8만명(' 30년 기준) ※ 市도기본의 기본계획(' 20.9.)

나.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개요

- 협약주체 : (위탁)서울시·성남시 ↔ (수탁)서울교통공사
- 협약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 26.12월 개통 예정)
- 협약사무 : 여객운송 및 운임의 징수관리, 사업시설 유지보수 등
- 운영방식 : 트램 전문운영 자회사 설립 및 운영

다. 자회사 설립(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 검토 개요】

✓ (수행)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간)' 25.2월 ~ 8월 / (기준)지방공기업 설립기준

- (적정성) 자회사 설립의 필요성 및 법률적 타당성 확보
 - 한정된 위탁기간 및 공사의 노선과 비연계되는 별도의 노선 등 특수성 고려
 - 협약 조건 내 효율적,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자회사 설립·운영 필요
 - 트램은 관련 법령에서 궤도사업으로 분류 및 기준 충족
- (수지분석) 자회사 운영방식이 공사 직영 대비 5년간 160억원 수지 개선
 - 운송수익은 동일하나, 자회사 운영시 인건비 절감 구조로 수지 개선
- (재원조달) 자본금(20억원) 규모 및 채원 조달방법 적정
 - 출자한도 :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24조원)의 100분의 10 이내
 - 규모산정 : 개통 전 사업비 분기 후불 지급에 따라 3.5개월 운영비 책정

라. 운영자회사 설립(안)

- 법인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 회 사 명 : (가칭) 위레트램운영주식회사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트램 차량기지 종합관리동)
 - 자 본 금 : 20억원(서울교통공사 100% 출자)
- 조직체계 : 사장, 1본부, 3처(7팀)
 - 상임이사 : 대표이사 및 본부장(*법인신고 시 결정)
 - 비 상 임 : 감사(당연직), 기타비상무이사(당연직)
 - 인 력 : 93명(임원 2명, 직원 91명) ※ 공사 지원인력 2명(한시정원)

[조 직 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채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④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별첨 :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운영(안)_이사회 부의 안건 1부.

※ 작성자 : 교통실 도시철도과 고동오 (☎ 02-2133-4352)

서울교통공사 철도사업처 박기영 (☎ 02-6311-227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A	26.6 ~ 50.3	주간선 도로	5,165	관악구 남현동 산93-5	동작구 동작동 산29-3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도로)	과천대로 동작대로	서울시 고시 제2025- 227호 (25.4.24)	•도로 중복결정:지상 -동작대로(8,893㎡) -현충로(963㎡) •철도 중복결정:지상 -도시철도(488㎡) •광장 중복결정:지상 -이수광장(963㎡) •공원 중복결정:지상 -현충근린공원(2,613㎡) •방재시설 중복결정:지상 -방수설비B(5,087㎡) •도로 중복결정:지하 -과천대로(59,959㎡) -동작대로(63,726㎡) -중로3(187㎡) -소로2-1(21㎡) -소로1-B(199㎡) -소로1-C(22㎡) •철도 중복결정:지하 -도시철도(13,454㎡)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지하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697㎡) •광장 중복결정:지하 -사당IC광장(21,695㎡) -사당광장(2,077㎡) -이수광장(1㎡) •공원 중복결정:지하 -현충근린공원(2,764㎡) -남대령제2소공원(27㎡) •하천 중복결정:지하 -하천(121㎡) •학교 중복결정:지하 -경문고등학교(124㎡)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지하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205㎡)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지하 -한국전력공사(582㎡) •방재시설 중복결정:지하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방수설비B(11,080㎡)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변경	대로	3	A	26.6 ~ 50.3	주간선 도로	5,165	관악구 남현동 산93-5	동작구 동작동 산29-3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도로)	과천대로 동작대로	서울시고 시 제2025- 227호 (25.4.24)	●도로 중복결정:지상 -동작대로(8,893㎡) -현충로(963㎡) ●철도 중복결정:지상 -도시철도(488㎡) ●광장 중복결정:지상 -이수광장(963㎡) ●공원 중복결정:지상 -현충근린공원(2,613㎡) ●방재시설 중복결정:지상 -방수설비B(5,087㎡) ●도로 중복결정:지하 -과천대로(58,991㎡) -동작대로(63,726㎡) -광로3-19(4,199㎡) -중로3(187㎡) -소로2-1(21㎡) -소로1-B(199㎡) -소로1-C(22㎡) ●철도 중복결정:지하 -도시철도(13,078㎡) ●광장 중복결정:지하 -사당IC광장(20,857㎡) -사당광장(2,494㎡) -이수광장(1㎡) ●공원 중복결정:지하 -현충근린공원(2,764㎡) -남태령제2소공원(27㎡) ●학교 중복결정:지하 -경문고등학교(124㎡) ●방재시설 중복결정:지하 -방수설비B(11,040㎡)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신설	소로	1	A	10.0	국지 도로	138	서초구 방배동 산100- 3	서초구 방배동 686-16 4	일반도로	-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입체적 결정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내용		
기정	대로 3-A	지하 도로	관악구 남현동 산93-5	동작구 동작동 산29-3	길이	이수방향	4,155m	서울시 고시 제2025-27호 (25.4.24) ●도로 중복결정:지하 -과천대로 (59,959㎡) -동작대로 (63,726㎡) -중로3(187㎡) -소로2-1(21㎡) -소로1-B(199㎡) -소로1-C(22㎡) ●철도 중복결정:지하 -도시철도 (13,454㎡)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지하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697㎡) ●광장 중복결정:지하 -사당IC광장(21,695㎡) -사당광장(2,077㎡) -이수광장(1㎡) ●공원 중복결정:지하 -현충린공원(2,764㎡) -남태령제2소공원(27㎡) ●하천 중복결정:지하 -하천(121㎡) ●학교 중복결정:지하 -경문고등학교(124㎡)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지하 -까리파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205㎡)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지하 -한국전력공사(582㎡) ●방재시설 중복결정:지하 -방수설비B(11,080㎡)
						과천방향	4,901m	
					폭	이수방향	13.3m	
						과천방향	13.3m	
					높이 (평균해수면 기준)	이수방향	+58.92m(최저심도) -60.41m(최고심도)	
						과천방향	+58.96m(최저심도) -54.21m(최고심도)	
					수평투영면적		138,417㎡	
변경	대로 3-A	지하 도로	관악구 남현동 산93-5	동작구 동작동 산29-3	길이	이수방향	4,155m	서울시 고시 제2025-27호 (25.4.24) ●도로 중복결정:지하 -과천대로 (58,991㎡) -동작대로 (63,726㎡) -광로3-19(4,199㎡) -중로3(187㎡) -소로2-1(21㎡) -소로1-B(199㎡) -소로1-C(22㎡) ●철도 중복결정:지하 -도시철도 (13,078㎡) ●광장 중복결정:지하 -사당IC광장(20,857㎡) -사당광장(2,494㎡) -이수광장(1㎡) ●공원 중복결정:지하 -현충린공원(2,764㎡) -남태령제2소공원(27㎡) ●학교 중복결정:지하 -경문고등학교(124㎡)
						과천방향	4,901m	
					폭	이수방향	13.3m	
						과천방향	13.3m	
					높이 (평균해수면 기준)	이수방향	+58.92m(최저심도) -60.41m(최고심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입체적 결정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내용		
					과천방향	+58.96m(최저심도) -54.21m(최고심도)		- 방재시설 중복결정: 지하 -방수설비B(11,040㎡)
					수평투영면적	139,365㎡		

참고1) 입체적결정 높이(평균해수면 기준)는 구조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6m)을 포함한 값임

참고2) 지상구조물 입체적 결정 제외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A	대로 3-A	1. 연장 : 변경없음 2. 폭원 : 변경없음	수직방재소 위치 이동 및 도로터널 선형 변경
-	소로 1-A	1. 연장 : 138m (신설) 2. 폭원 : 10.0m (신설)	수직방재소 진입로 연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라.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B	방수설비	동작동 316-2번지 일원	62,532.1	감) 79.0	62,453.1	서울시 고시 제2025 -227호 (25.4.2 4)	- 도로 중복결정: 지상 -동작대로(43㎡) -대로1-67(248㎡) -대로3-A(5,087㎡) -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 지상 -사당역 복합환승센터(749㎡) - 하천 중복결정: 지상 -하천(169㎡) - 도로 중복결정: 지하 -과천대로(1,482㎡) -동작대로(21,340㎡) -현충로(1,461㎡) -광로3-64(929㎡) -소로1-B(69㎡) -소로3-2(158㎡) -소로3-6(112㎡) -소로3-49(72㎡) -기타도로(127㎡) -대로3-A(11,040㎡) - 철도 중복결정: 지하 -도시철도(4,879㎡)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지하 -사당역 복합환승센터(933㎡) ●광장 중복결정:지하 -사당광장(2,047㎡) -이수광장(3,994㎡) ●공원 중복결정:지하 -현충근린공원(2,133㎡) ●하천 중복결정:지하 -하천(2,96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마.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입체적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입체적 결정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내용		
기정	B	방수 설비	방배동 507-1	동작동 316-2	길이	3,451m	서울시 고시 제2025-22 7호 (25.4.24)	●도로 중복결정:지하 -과천대로(1,475㎡) -동작대로(21,340㎡) -현충로(1,461㎡) -광로3-64(929㎡) -소로1-B(69㎡) -소로3-2(158㎡) -소로3-6(112㎡) -소로3-49(72㎡) -기타도로(127㎡) -대로3-A(11,080㎡) ●철도 중복결정:지하 -도시철도(4,876㎡)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지하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004㎡) ●광장 중복결정:지하 -사당광장(2,077㎡) -이수광장(3,994㎡) ●공원 중복결정:지하 -현충근린공원(2,133㎡) ●하천 중복결정:지하 -하천(2,963㎡)
					폭	13.46m		
					높이 (평균해수면기준)	-33.89m(최저심도) -69.72m(최고심도)		
					수평투영면적 (지상구조물 제외)	55,188㎡		
변경	B	방수 설비	방배동 507-1	동작동 316-2	길이	3,451m	서울시 고시 제2025-22 7호 (25.4.24)	●도로 중복결정:지하 -과천대로(1,482㎡) -동작대로(21,340㎡) -현충로(1,461㎡) -광로3-64(929㎡) -소로1-B(69㎡) -소로3-2(158㎡)
					폭	13.46m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입체적 결정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내용		
					높이 (평균해수면기준)	-33.89m(최저심도) -69.72m(최고심도)		-소로3-6(112㎡) -소로3-49(72㎡) -기타도로(127㎡) -대로3-A(11,040㎡) ●철도 중복결정:지하 -도시철도(4,879㎡) ●자동차정류장 중복결정:지하 -사당역 복합환승센터(933㎡) ●광장 중복결정:지하 -사당광장(2,047㎡) -이수광장(3,994㎡) ●공원 중복결정:지하 -현충근린공원(2,133㎡) ●하천 중복결정:지하 -하천(2,963㎡)
					수평투영면적 (지상구조물 제외)	55,109㎡		

참고1) 입체적결정 높이(평균해수면 기준)는 구조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6m)을 포함한 값임

참고2) 지상구조물 입체적 결정 제외

바.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방수설비 B	방수설비	1. 면적 변경 : (당초) A=62,532.1㎡ (변경) A=62,453.1㎡ 감) 79.0㎡	● 수직방재소 위치 이동 및 복합터널 선형 변경

3. 입안사유

- 기존 수직방재소 위치를(방배동 산102-8번지) 토지소유자 및 교육부 의견을 반영하여 방배동 산100-3번지로 변경하고, 시설 운영을 위한 진·출입 도로(소로1류)를 신설하는 한편, 인근 공동주택 저층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본선 일부 구간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실시계획 협의 중 교육부에서 수직방재소 부지(방배동 산102-8번지,당초 수직방재소)는 백석예대의 교육용기본재산(교지)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존치 필요 의견 제시로 수직방재소 위치 변경.

4. 도시관리계획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나. 도시계획시설 : 도로, 방수설비, 철도, 자동차정류장, 하천, 광장, 공원, 학교

다. 기 타 :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5. 주민 의견청취사항

가. 열 람 기 간 : 2026.02.26. ~ 2026.03.12.

나. 계 재 방 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도시공간포털)

다. 열 람 장 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관악구청, 서초구청

라. 접 수 의 건 : 의견없음

6.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협약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경찰청 경무담당관	· 경찰청에서 소유 중인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용도 폐지 및 유상 사용허가 시점 등은 관련기관과 협의 후 결정이 필요함을 참고 바람	· 경찰청 소유 토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무상귀속 등)한 후 협의결과를 첨부하여 재협의 하겠음.	반영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출된 '보도공사 설계지도점검 조치계획' (토목부-19007, 25.10.16.)과, 26년2월 시행한 '보도공사 설계 매뉴얼(Ver3.0)' 을 준수	· 기 제출된 '보도공사 설계지도점검 조치계획' (토목부-19007, 25.10.16.)과, 26년 2월 시행한 '보도공사 설계 매뉴얼(Ver3.0)' 을 준수하겠음.	반영
	· 서초성위마을 공공주택지구에 따른 주변도로 정비(안)에 한전·통신 지중화 계획이 있을 시 신설되는 '소로(1-A)' 부분도 지중화 연계·추진	· 현재는 별도의 계획이 없는 것을 확인되었으며, 추후 지중화 연계·추진이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 도시계획에 따른 보도정비구간내 한전주가 있을 경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중화 검토·추진 · 보도위 차량진출입로 설치시 「서울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 지침」 준수(포장재, 횡단경사 등) - 市홈페이지-분야별정보(안전)-도시안전-보도관리-보도블록 자료실	· 현재 보도정비구간내 한전주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추후 지중화 연계·추진이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 보도위 차량진출입로 설치시 「서울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 지침」 을 준수하겠음.	반영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내수재해 위험지구(이수역 일대 등)에 대한 배수개선을 위해 동작구 치수과에서 실시한 「사당동 남성사계시장 침수방지대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반영하여, 경문고등학교 인근 계획된 배수터널의 유입관로(Blockout)을 경문교교 교차로 인근으로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당동 남성사계시장 침수방지대책 타당성조사” 수직구 #4 예정부지를 감안하여 유입관로(Blockout) 횡갱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향후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반영하겠음	반영

협의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초구청 푸른도시과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 시설(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안)열람공고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으나, 기 협의사항(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실시계획(변경) 인가 전, 산지전용사함은 우리구와 별도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지전용사함은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반영
한국자산 관리공사	◦ 협의대상 1필지(서초구 방배동 686-11번지, 전체 20㎡, 편입 20㎡)는 유류재산으로 관리중이며, 재산의 위치, 형태, 규모 등 고려 시 단독활용이 제한되는점, 향후 별도 사용계획 및 가치상승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점, 계획의 내용, 성격 등 고려 시 편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협의에 동의함 * 협의요청 2필지 중 1필지(서초구 방배동 686-246번지) 검토 제외(사유:매각) · 본 협의 의견은 「국유재산법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 협의 등) 제1항」에 따른 의견이며, 국유재산의 귀속 및 매각(처분), 사용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며, 무단으로 사용(착공)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해당 건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고시 즉시 고시결과 및 편입토지조서를 우리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협의 요청한 방배동 686-11번지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겠으며, 방배동 686-246번지는 26년01월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매각된 필지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사용전 협의하도록 하겠음. · 국유재산의 귀속 및 매각(처분) 등 소유권 변동사항 발생시 별도 협의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후 고시문 및 편입토지내역 통보하도록 하겠음.	반영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안)은 우리 공사에서 기회신한 토목처-1531('26.2.11.)호와 같이 다음의 제반 협의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공사와 업무협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반 협의서류 목록 1) 도시철도 구조물 현황측량 실시 후 측량결과를 반영한 흠막이 설계도서 가) 측량성과도, 구조물 상관관계 도면(이격거리 등 포함) 나) 굴착시 도시철도 구조물 변위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계획 수립(필요시) 2) 흠막이 설계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3) 단계별 굴착에 따른 도시철도 구조물 안정성검토서	· 공사착공 전 제반 협의서류를 구비하여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하겠음.	반영

협약부서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4) 기타 협의에 필요한 도서 등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 계획부	· 금회 계획(안)의 도로는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성뒤마을 사업')의 보도 구간과 접속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해당 접속을 위해서는 지구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결과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후 보도 접속 구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 성뒤마을 사업 내 도로 하부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각종 시설이 접속되거나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우리 공사 설계 및 시공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뒤마을 사업에서 설계 변경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적인 대안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뒤마을 사업부지내 개설되는 우수관로 및 도로접속에 관한 사항을 공사설계 및 시공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설계변경등이 어려운 경우 대안을 마련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 계획부	· 성뒤마을 사업 중 토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용계약 체결 시에는 성뒤마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성뒤마을 사업의 준공 등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주체에 의한 원상복구,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재시공 이행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사착공 전 성뒤마을 사업 중 토지 사용을 위해 사전에 별도의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사용계약 체결 시에는 성뒤마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겠음. 또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성뒤마을 사업의 준공 등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주체에 의한 원상복구,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재시공 이행 등을 포함하겠음.	반영

7.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 자금조달방안 :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민간투자비	자기자본	589	
	타인자본	2,242	
재정지원금	건설보조금	2,660	
	보상비	316	
계		5,807	2016년2월1일 불변가격

－ 단계별집행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총사업비	5,807	303	600	726	1,272	1,508	1,398
민간투자비	2,831	196	391	327	566	669	682
건설보조금	2,660	-	-	399	706	839	716
보상비	316	107	209	-	-	-	-

나. 추진경위

- － ' 17.03. 민간제안서 제출
- － ' 23.1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 － ' 24.11. 도시계획시설 결정 열람공고
- － ' 25.04.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과천시 구간 '25.05.)
- － ' 25.06.~10.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 － ' 25.08.~09. 사업인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 ' 26.01. 실시계획 승인 고시(수직방재소 제외)
- － ' 26.02. 수직방재소 변경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 － ' 26.02.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변경(안) 입안 신청
- － ' 26.02.~03.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도제경 (☎ 2133-8454)

- 붙임 1. 위치도 및 사업노선 현황 1부.
 2.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변경)도(안) 1부. 끝.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명동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남산 및 주변부로 확산시켜 남산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권 회복을 도모하고, 남산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관리와 쾌적한 여가 공간 조성을 통해 남산 일대를 글로벌 생태여가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용산구의 남산 일대
 - (중 구) 명동, 필동, 장충동, 회현동
 -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2동, 용산2가동, 한남동
- 재생유형 : 중심시가지형
- 사업면적 : 3,295,807㎡
- 사업기간 : 2026~2031년 (마중물 예산 투입기간)
- 총사업비(안) : 19,701백만원 (마중물 사업비)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내용 (8개 마중물 사업)

- (활력) 선도적 추진으로 지역활성화 유도
 - ▶ 남산 360° 전망대 설치 및 조망거점 8개소 조성
- (연결) 남산~주변부 보행 연결 등 연계 확장
 - ▶ 남산 주변부 보행연결 및 접근성 강화(명동~남산 보행로 정비 등)
 - ▶ 남산 진입부 경관 개선(진입부 정비, 매력가든 조성 등)
 - ▶ 곤돌라 주변지역(예장자락) 도시관리 사업
- (회복) 경관 가치회복·생태거점 강화
 - ▶ 남산 식생 및 자연성 복원 등 생태환경복원 사업
- (체험) 지역거점 강화 등을 통한 다층적 여가경험 활성화
 - ▶ 남산 환상림 조성사업(보차분리, 테크길 조성 등)
 - ▶ 남산 순환로 계절 경관 조성사업(계절별 식재 및 안내판 설치)
- (기타) 지속가능한 남산 기본계획 마련

다. 추진경위 및 계획

- 「지속가능한 남산」 추진계획 수립 : ' 23.07.05.
- 남산 발전위원회 자문(3회) : ' 24.9.~' 25.12.
- 활성화지역 지정(시공고 2024-2737호) : ' 24.10.04.
- 「더 좋은 남산활성화계획」 대외 발표 : ' 25.12.02.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도시재생 분야) : ' 26.02.04.
- 관련 부서(기관) 협의 : ' 26. 2.~3.
- 주민공청회 : ' 26.04.03
- 시의회 의견청취 : ' 26.04. 중
- 투자심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26.05. 중
- 활성화계획 결정·고시 : ' 26.05.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나. 예산조치 :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예산 확보 필요

※ 마중물 사업비 : 197억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2026	2027	2028	2029~
19,701	1,571	10,031	5,001	3,100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의견청취 사항

※ 작성자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연현미 (☎02-2133-8489)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 -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안건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29,539	-	229,539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9,500	39,500	17.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29,539	감 39,500	190,039	82.8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9,500	200% 이하	○ 서울 문화공연장의 균형있는 공급과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여의도공원 내 대규모 문화시설(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일부 변경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190,039	50% 이하	

3. 입안사유

- 서울시 대규모 공공 공연장의 균형있는 공급과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건립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가.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
나. 도시계획시설 : 공원

5. 추진경위

- ' 21.12. ~ ' 23.11. :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 23. 3. 9. :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발표(그레이트한강 기자설명회)
- ' 23. 5.15. ~ 8.10. :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기획 디자인공모
- ' 23.11. 9.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서울시장 제140호)
- ' 23.12. 1. ~ 7.31. : 타당성조사 완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
- ' 24.10. 2. : ' 24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 완료
- ' 25. 4. 2. : ' 25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 완료(행정안전부)
- ' 25. 6.27. : ' 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의결
- ' 25. 7.25.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시행계획 수립(서울시장 제58호)
- ' 25. 8. 5. ~ 10.23.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
- ' 25.11. 4.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 25.12. ~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 주민의견청취(예정)

- 가. 열 램 기 간 : 2026.04.02. ~ 2026.04.16.
나. 계 재 방 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도시공간포털)
다. 열 램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손정민 (☎ 2133-6978)

붙임 1. 위치도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안) 1부. 끝.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